



2022.4.

국회예산정책처 | 조세수첩

# 2022 조세수첩

## Tax Statistics 202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CONTENTS

##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 01 조세개요

1. 조세 체계	2
2. 조세의 분류	3
3. 조세수입	4
4.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5
5.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6
6. 국제비교: 조세구조	8
7.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10

### 02 국세

8. 국세 체계	12
9. 주요 세제의 시기별 변화	13
10. 국세수입	16

#### <소득세>

11. 소득세 과세체계	20
12.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22
13. 소득세 세율	24
14. 소득세수 현황	25
15. 근로소득세 과세 현황	26
16.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28
17.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29
18.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34
19.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35

## <법인세>

20. 법인세 과세체계	44
21. 법인세 과세대상	45
22. 법인세 최저한세	46
23.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47
24. 법인세수 현황	48
25. 신고법인수 추이	49
26. 법인세 과세 현황	50
27. 법인세 신고 현황: 기업규모별	52
28. 법인세 신고 현황: 과표구간별	53
29.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54
30.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56
31.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57
32.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58
33.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63
34.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64

## <부가가치세>

35.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68
36. 영세율과 면세	70
37. 부가가치세수 및 과세 현황	72
38.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74
39. 국제비교: 경감세율	77
40.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78
41.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79
42.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80

## <상속세·증여세>

43. 상속세 과세체계	84
44. 증여세 과세체계	86

# CONTENTS

- 45. 상속·증여세수 현황 ..... 88
- 46. 국제비교: 상속·증여세 부담 ..... 90
- 47. 국제비교: 상속세제 ..... 91
- 48.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 92

## <기타세목>

- 49. 개별소비세 ..... 96
- 50. 주세 ..... 98
- 51. 교통·에너지·환경세 ..... 99
- 52. 종합부동산세 ..... 100
- 53. 증권거래세 ..... 104
- 54. 인지세 ..... 105
- 55. 교육세 ..... 106
- 56. 농어촌특별세 ..... 107
- 57. 관세 ..... 108

## 03 지방세

- 58. 지방세 체계 ..... 112
- 59.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 113
- 60. 지방세 수입 ..... 115

## <지방세목>

- 61. 취득세 ..... 118
- 62. 지방소득세 ..... 121
- 63. 재산세 ..... 123
- 64. 자동차세 ..... 125
- 65. 지방소비세 ..... 127
- 66. 담배소비세 ..... 128
- 67. 지방교육세 ..... 129

68. 등록면허세 .....	130
69. 주민세 .....	131
70. 지역자원시설세 .....	132
71. 레저세 .....	134

## 04 조세지출

72. 국세 조세지출 현황 .....	136
73. 국세 세목별 조세지출 .....	137
74. 예산분류별 국세 조세지출 .....	140
75. 국세 조세특례평가제도 .....	142
76. 2022년 국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	145
77. 국세 조세지출 관리규정 .....	149
78.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 .....	150
79. 지방세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	151
80. 주요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 .....	152
81. 2022년 지방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	153
82. 지방세 조세지출 관리규정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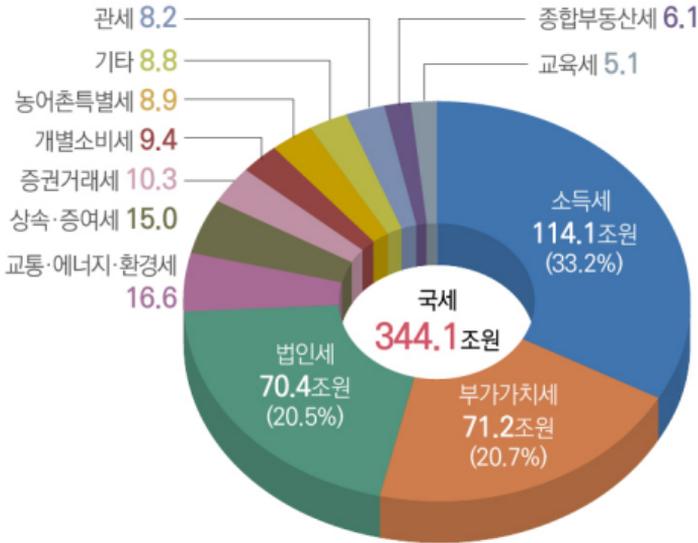
### <부록>

조세용어 해설 .....	16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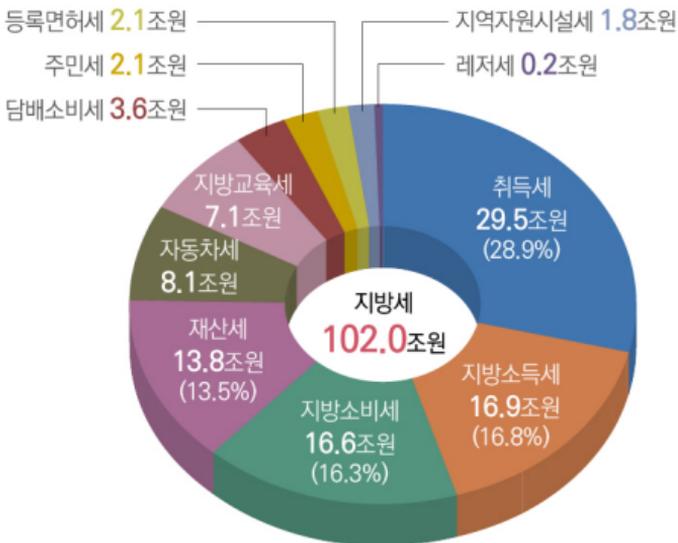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 국세·지방세 세목구성 및 세수입 현황

### 국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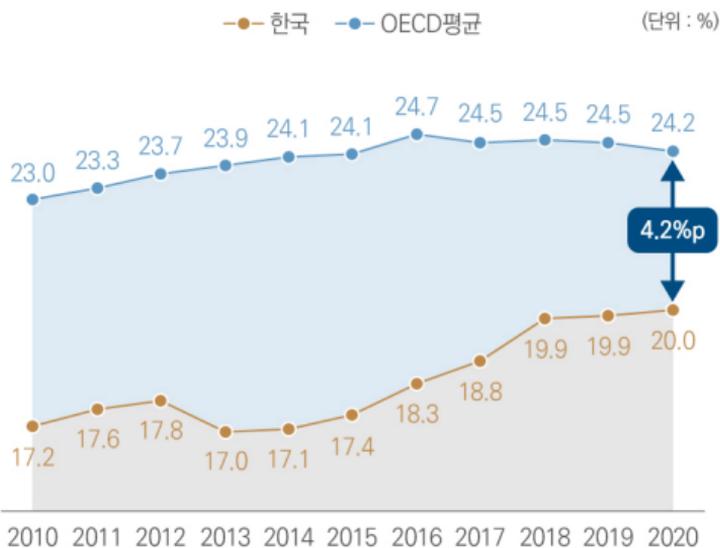


### 지방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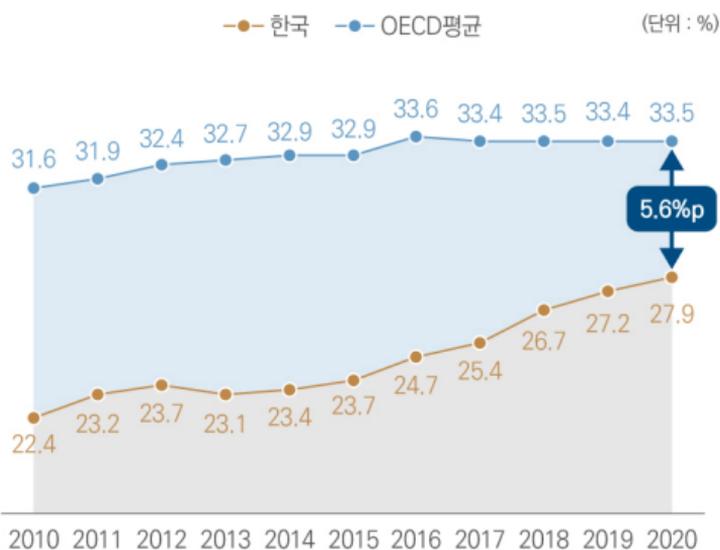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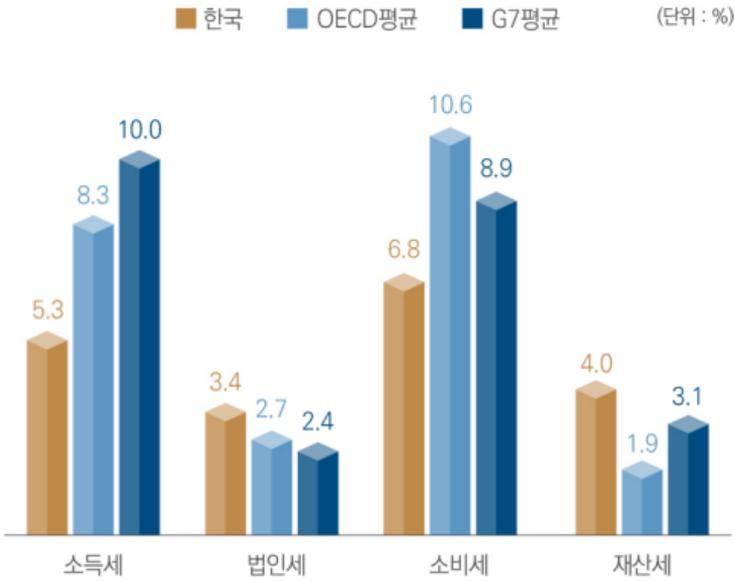


### 국민부담률



## 조세 비중

###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2020)



###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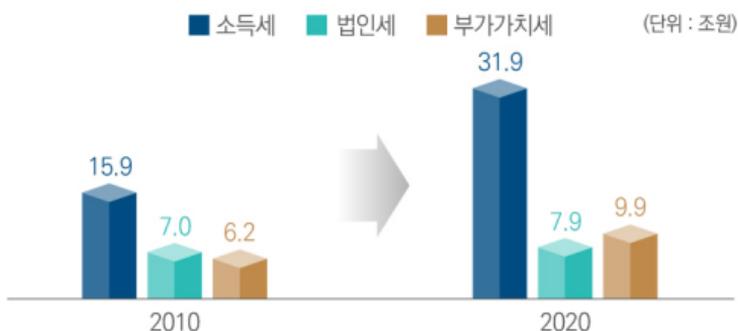
\* 총 조세 = 국세+지방세

※ 꺾은선은 지방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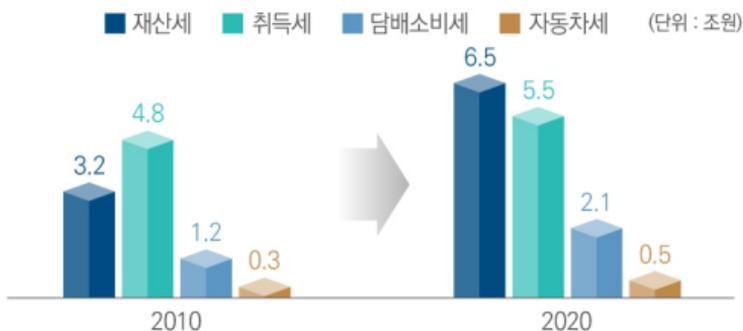
## 국세·지방세 감면액



## 국세 감면액(세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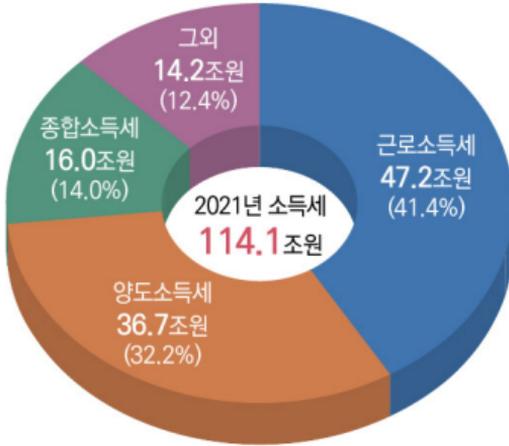


## 지방세 감면액(세목별)



## 소득세 세입 및 면세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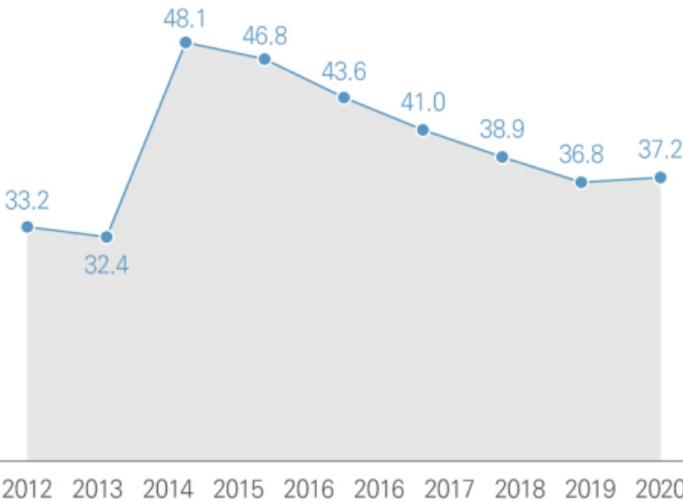
### 소득별 세입



\* 그외 항목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 소득세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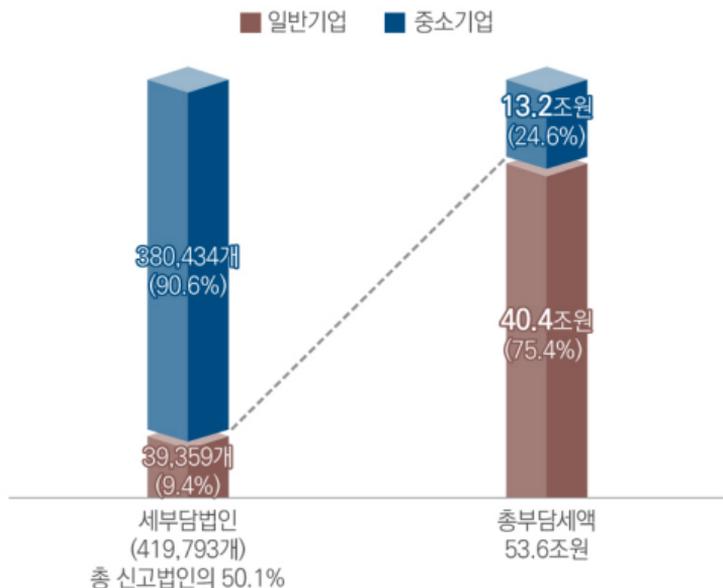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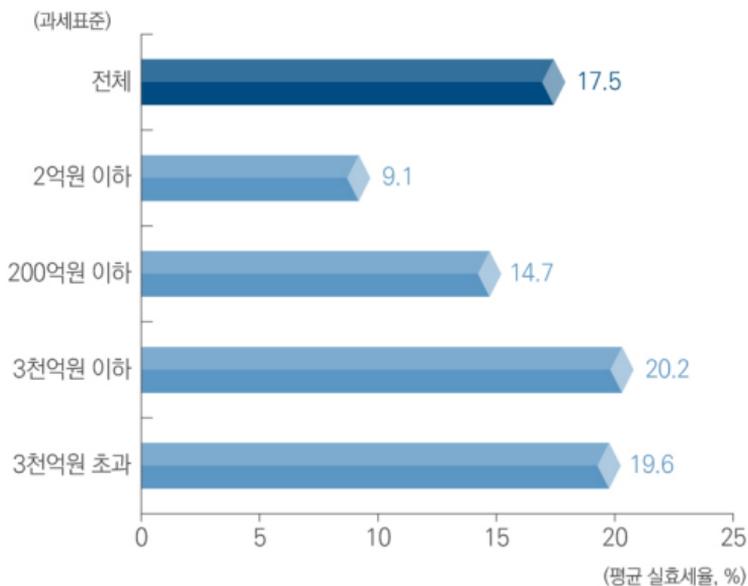
\* 근로소득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중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없는 자

## 법인세 세부담 구조(2020)



##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2020)

(국내 총부담세액/과세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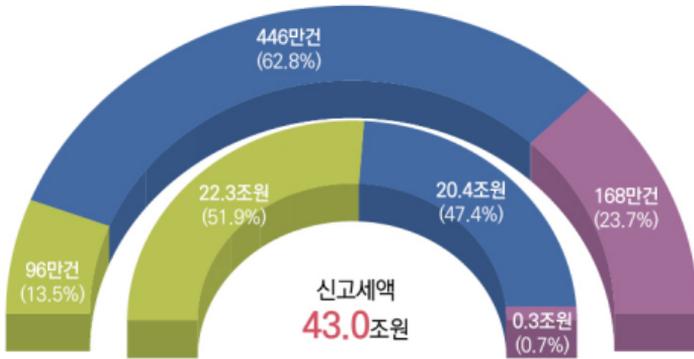


##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 부담 현황(2021)

■ 법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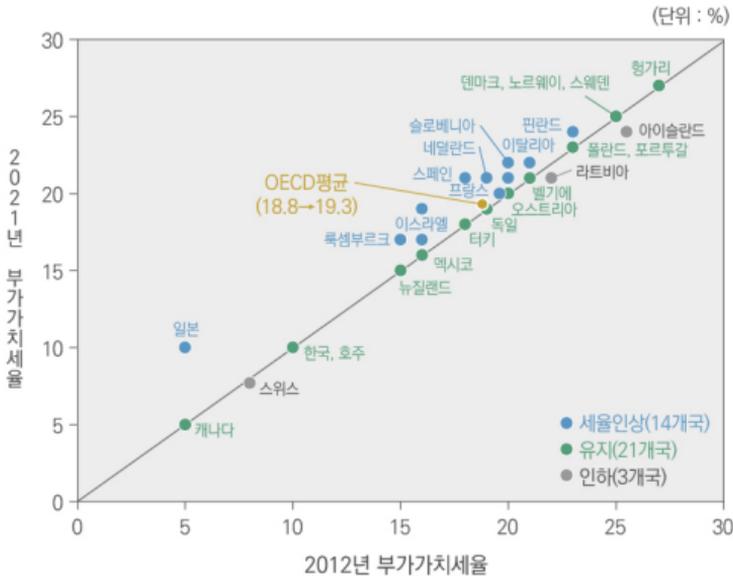
신고건수  
711만건



\* ( )는 비중

※ 2020년 기준 신고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가산세액-경감·신고세액

## OECD국가들의 세율변화



##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결정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 추이

### 상속세추이

(2016년 VS 2020년)



### 증여세추이

(2016년 VS 2020년)



■ 결정세액 ■ 과세가액 ■ 과세미달가액 ● 대상인원·건수 (단위 : 조원)



## 유류(휘발유·경유)의 조세부담

### 휘발유 1ℓ 당 조세부담



-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가격 1,635.22원/ℓ (보통 휘발유, 2022.1.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1.11.12.~2022.4.30.의 탄력세율 적용

### 경유 1ℓ 당 조세부담



-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가격 1,453.53원/ℓ (자동차용 경유, 2022.1.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1.11.12.~2022.4.30.의 탄력세율 적용

## 담배의 조세부담

### 일반담배(컬러 20개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176.5원을 기준으로 계산

### 전자담배

컬러형(20개비)

(단위 : 원)

액상형(니코틴 1ml)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495.5원을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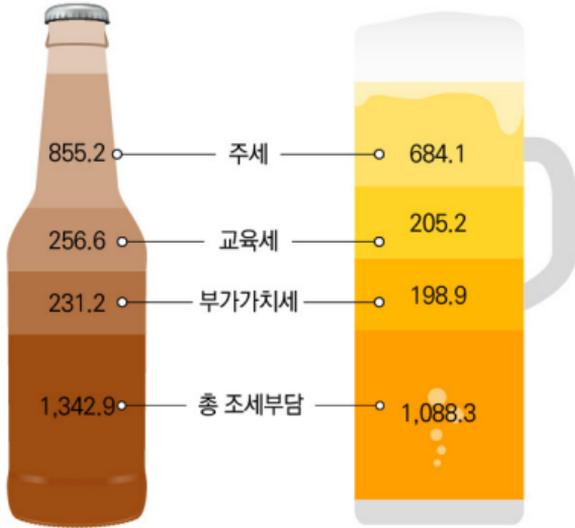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4,043원 (1ml 기준으로 환산)을 바탕으로 계산

## 맥주·탁주의 1ℓ 당 조세부담

맥주

(단위 : 원)

생맥주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200원/ℓ 을 기준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100원/ℓ 을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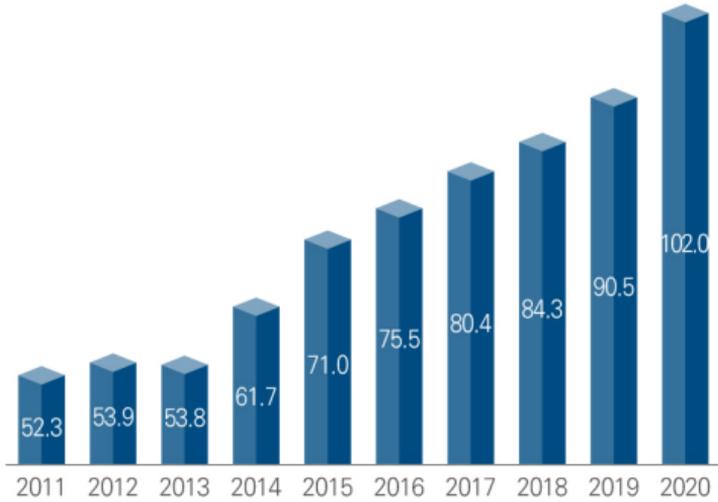
탁주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988원을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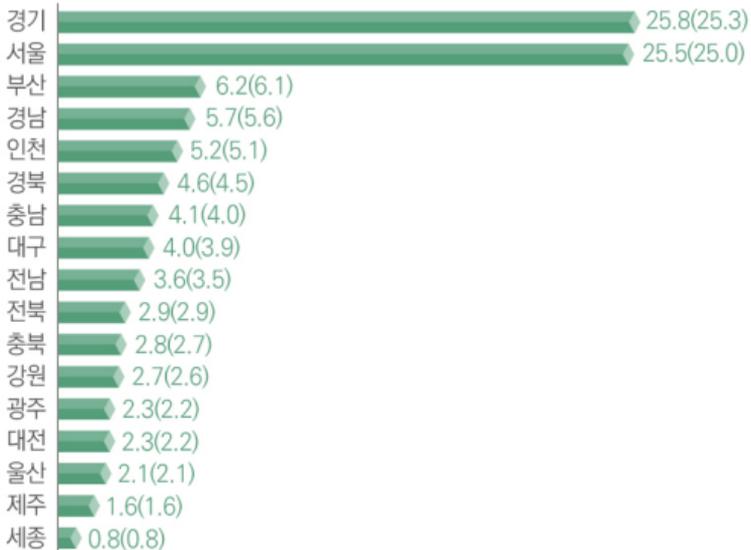
## 지방세 징수액 추이

(단위 : 조원, %)



##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2020년)

(단위 : 조원)



\* ( )은 전체 지방세 징수액 대비 시도별 징수액 비중(단위: %)



Tax Statistics 2022

# Part 1

## 조세개요



# 1 조세 체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li> <li>• 법인세</li> <li>• 농어촌특별세 (소득·법인세 감면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li> <li>• 증여세</li> <li>• 종합부동산세</li> <li>• 증권거래세</li> <li>• 인지세</li> <li>•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면허세 감면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li> <li>• 개별소비세</li> <li>• 교통·에너지·환경세</li> <li>• 주세</li> <li>• 관세</li> <li>•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분·레저세분, 관세 감면분)</li> <li>• 교육세</li> </ul>

국세 14개

25개 세목

지방세 11개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li> <li>• 주민세 (종업원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li> <li>• 등록면허세</li> <li>• 재산세</li> <li>• 주민세(사업소분)</li> <li>• 자동차세(소유분)</li> <li>• 지방교육세(취득세분·등록면허세분·주민세 사업소분·재산세분·자동차세 소유분)</li> <li>•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세</li> <li>• 지방소비세</li> <li>• 담배소비세</li> <li>• 자동차세(주행분)</li> <li>• 지방교육세(레저세분, 담배소비세분, 자동차세 주행분)</li> <li>•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li> </ul>

주: 주민세(개인분), 지방교육세(주민세 개인분)은 기타과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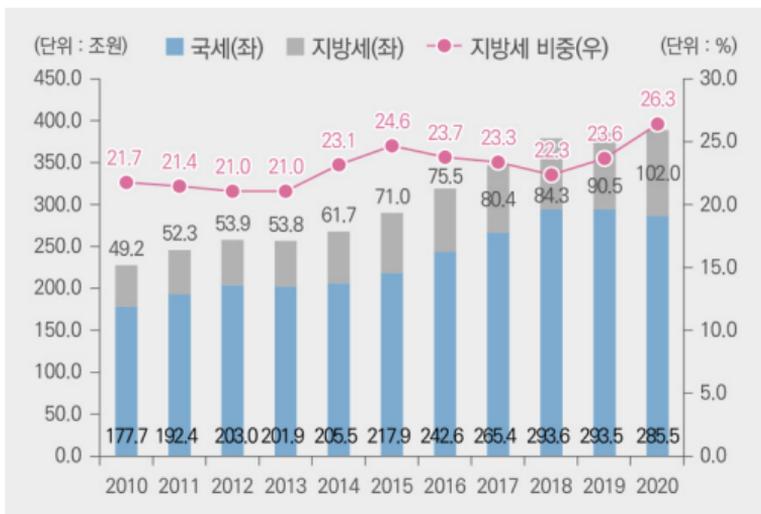
## 2 조세의 분류

구분	내용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 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중앙정부 - 지방세: 지방정부
내국세와 관세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 국경 내의 거래인지에 따른 분류 - 내국세: 국경 내 거래 - 관세: 국경을 통한 거래
인세와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지에 따른 분류 - 인세: 소득세 - 물세: 소비세, 재산세 등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일반회계 세원 - 목적세: 특별회계 세원(예: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화폐단위로 측정 - 종량세: 종량, 용량, 건수, 인원 등 [예: 주세의 주정(kℓ), 개별소비세 경마장 입장행위(1인1회 입장시)]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된 세원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부가세: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3 조세수입

#### ● 2020년 총조세는 387.6조원

- 총조세: ('10년) 226.9조원 → ('20년) 387.6조원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10년) 21.7% → ('20년) 26.3%



#### ● 2020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7% 감소



## 4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 2020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

• 국민부담률(잠정)은 27.9%

▶ 조세부담률(%) = 총조세 (국세+지방세)/ 명목GDP × 100

국민부담률(%) =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 명목GDP × 100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b>2010</b>	17.2 [22.4]	13.4	3.7
<b>2011</b>	17.6 [23.2]	13.9	3.8
<b>2012</b>	17.8 [23.7]	14.1	3.7
<b>2013</b>	17.0 [23.1]	13.5	3.6
<b>2014</b>	17.1 [23.4]	13.1	3.9
<b>2015</b>	17.4 [23.7]	13.1	4.3
<b>2016</b>	18.3 [24.7]	13.9	4.3
<b>2017</b>	18.8 [25.4]	14.5	4.4
<b>2018</b>	19.9 [26.7]	15.5	4.4
<b>2019</b>	19.9 [27.2]	15.3	4.7
<b>2020</b>	20.0 [27.9]	14.8	5.3

주: 1.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2.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 존재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 5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 2020년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 24.2%, G7평균 25.2%

-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 33.5%, G7평균 35.8%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OECD 평균	G7 평균	OECD 평균	G7 평균
<b>2010</b>	23.0	23.1	31.6	33.2
<b>2011</b>	23.3	23.6	31.9	33.7
<b>2012</b>	23.7	24.1	32.4	34.3
<b>2013</b>	23.9	24.4	32.7	34.8
<b>2014</b>	24.1	24.6	32.9	34.9
<b>2015</b>	24.1	24.9	32.9	35.2
<b>2016</b>	24.7	24.9	33.6	35.3
<b>2017</b>	24.5	25.2	33.4	35.6
<b>2018</b>	24.5	25.1	33.5	35.6
<b>2019</b>	24.5	25.1	33.4	35.5
<b>2020</b>	24.2	25.2	33.5	35.8

주: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OECD 38개국 기준 2020년 자료를 미제출한 일본, 호주는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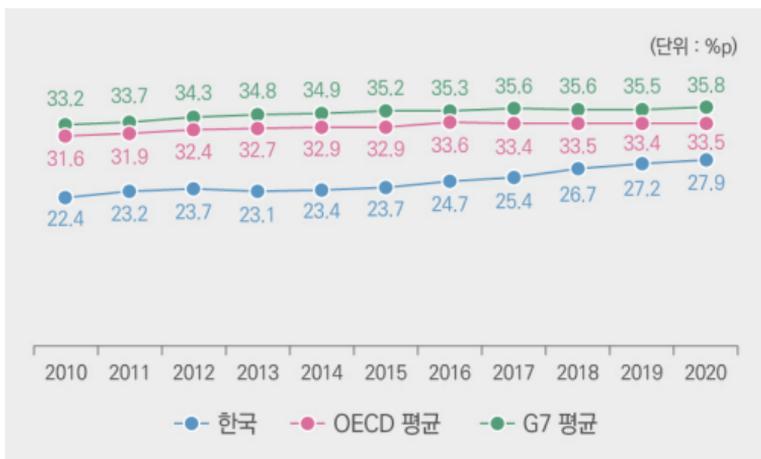
### ● 조세부담률 격차

- OECD평균과의 격차: 2010년 5.8%p → 2020년 4.2%p
- G7평균과의 격차: 2010년 5.9%p → 2020년 5.2%p



### ● 국민부담률 격차

- OECD평균과의 격차: 2010년 9.2%p → 2020년 5.6%p
- G7평균과의 격차: 2010년 10.8%p → 2020년 7.9%p



## 6 국제비교: 조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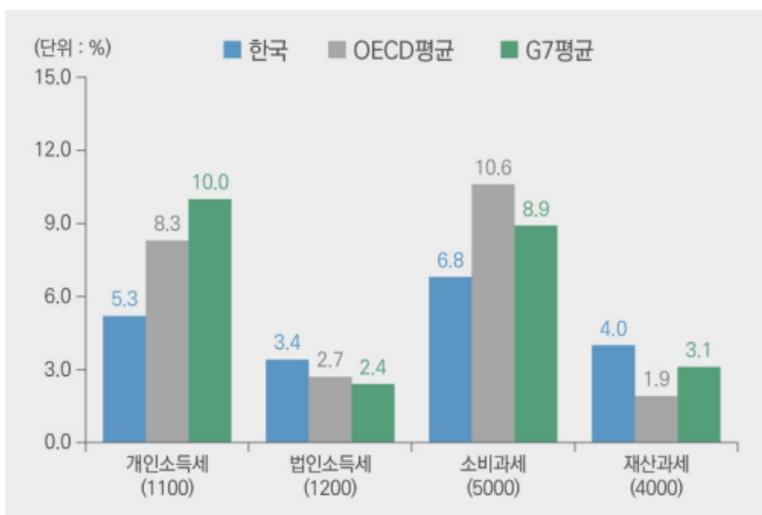
### ● 명목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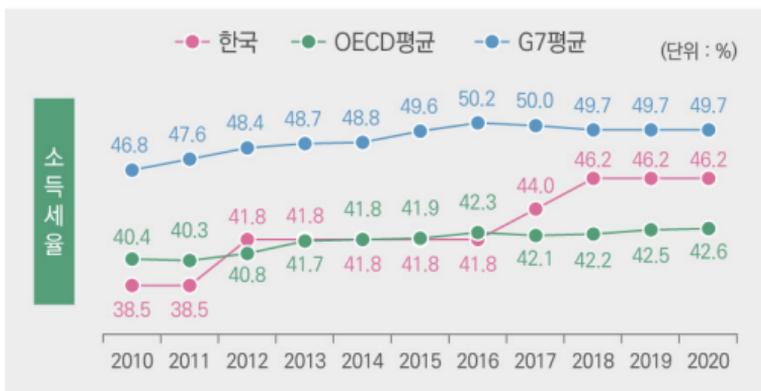
(단위: %)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개인소득세 (1100)	5.3	8.3	10.0
법인소득세 (1200)	3.4	2.7	2.4
소비과세 (5000)	6.8	10.6	8.9
재산과세 (4000)	4.0	1.9	3.1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OECD 38개국 기준  
 2 2020년 자료 미제출국(일본, 호주)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평균 계산



## ● 주요 세목 세율 추이



주: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방세등 포함 최고세율,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7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 ●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는 자주재정권이 강한 측면이 있어 비연방제 국가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

※ 단, 지방이전재원 고려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다름

#### • 연방제 국가

(단위: %)

	미국	독일	캐나다
국세	52.2	46.1	65.7
지방세	47.8	53.9	34.3

주: 2020년 기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1)

#### • 비연방제 국가

(단위: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국세	92.8	70.4	59.5	83.7
지방세	7.2	29.6	40.5	26.3

주: 2020년 기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1)

Tax Statistics 2022

#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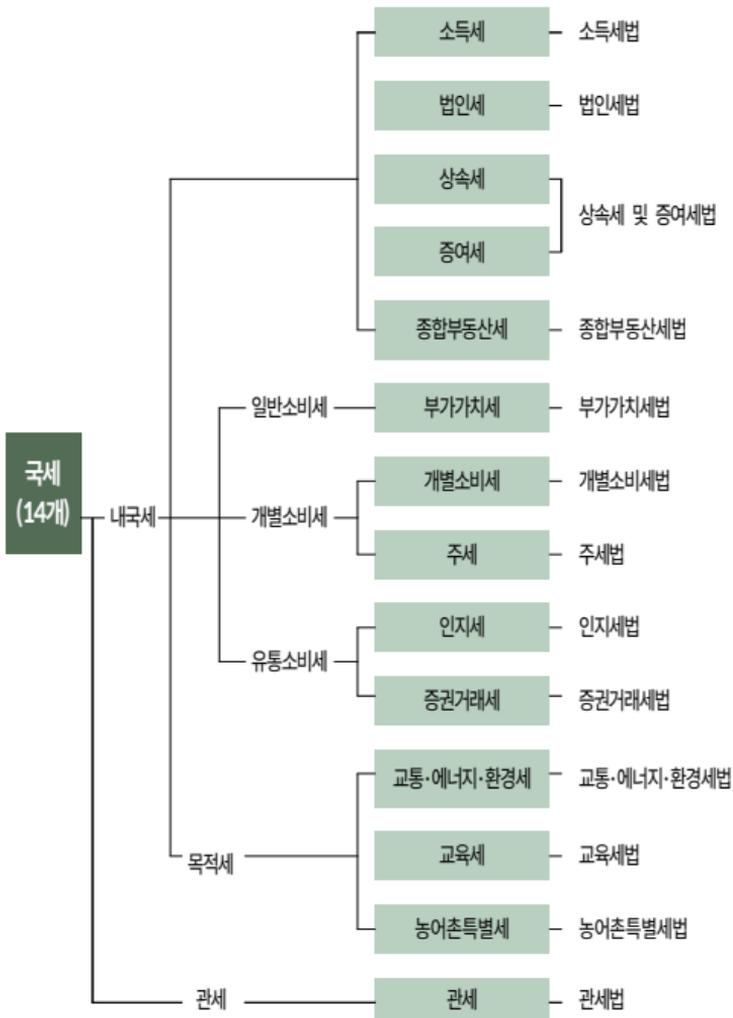
국세



## 8

## 국세 체계

## ● 총 14개 세목: 1세목 1세법



### ● 소득세제

- 공평과세 실현(종합과세제도 도입)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에 맞춰 시기별로 변화

50~60년대	1949	소득세법 제정 : 불완전 종합소득 과세	
70~80년대	1974	종합과세제도 재도입 (8~70%, 16단계 초과 누진세율)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90년대	1994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최고세율 인하(40%) 과표구간 4단계로 축소	
2000년 이후	2008	근로장려세제도입(EITC)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2014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2020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202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2	근로장려금 소득금액기준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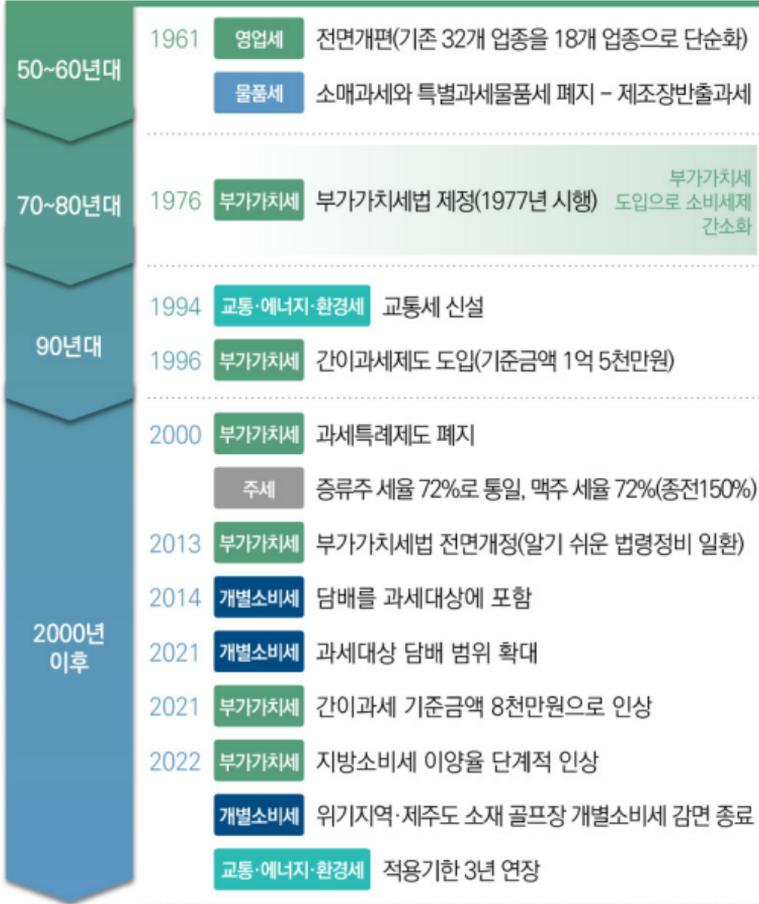
### ● 법인세제

- 1949년 독립세목화 된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임시투자세액공제)으로의 기능과 경제구조변화(고용증대세제)에 따라 변화

50~60년대	1949	법인세법 제정 : 소득세에서 분리	
70~80년대	197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1960년대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조세지원)의 기능 강화
90년대	1991	최저한세 도입, 적정유보초과소득세 도입 (2002년 폐지)	최소한의 조세부담
2000년 이후	2007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2015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2018	법인세율 인상 / 고용증대세제 신설	
	202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 일원화	
	2022	국가전략기술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 ● 소비세제

-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소비세제 간소화 이후 과세체계상 큰 변화 없이 과세합리화(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개편 중심으로 변화



## ● 재산세제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목적에 맞춰(부동산투기억제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시기별로 변화

양도 소득세	1951	1977	1989	2018	2020	2022	
	전시세제 (조세특례제한법) 도입	1세대 1주택 가운데 고급주택 과세로 전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신설	다주택자 중과세 재도입	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기준금액 상향	
50~60년대		70~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1950	1980		2004	2011	2017	2022
	상속세법 제정 증여세법 제정	포괄주의 과세폐지, 열거주의 도입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신고액공제 단계적 축소 (10%>7% 5%>3%)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확대
종합 부동산세				2005	2008	2018	2020
				종합 부동산세 시행	인별 합산으로 전환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등	법인·다주택자 중심 세율인상 등

## 10 국세수입

- 2021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2020년 대비 58.5조원 (20.5%) 증가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국세</b>	192.4 [8.3]	203.0 [5.5]	201.9 [-0.5]	205.5 [1.8]	217.9 [6.0]	242.6 [11.3]
소득세	42.3	45.8	47.8	53.3	60.7	68.5
법인세	44.9	45.9	43.9	42.7	45.0	52.1
상속·증여세	3.3	4.0	4.3	4.6	5.0	5.4
부가가치세	51.9	55.7	56.0	57.1	54.2	61.8
개별소비세	5.5	5.3	5.5	5.6	8.0	8.9
교통·에너지·환경세	11.5	13.8	13.2	13.4	14.1	15.3
관세	11.0	9.8	10.6	8.7	8.5	8.0
종합부동산세	1.1	1.1	1.2	1.3	1.4	1.3
주세	2.5	3.0	2.9	2.9	3.2	3.2
기타	18.3	18.5	16.5	15.8	17.8	18.1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는 전체 국세대비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b>국세</b>	265.4 [9.4]	293.6 [10.6]	293.5 [-0.0]	285.5 [-2.7]	344.1 [20.5]	100.0
소득세	75.1	84.5	83.6	93.1	114.1	33.2
법인세	59.2	70.9	72.2	55.5	70.4	20.5
상속·증여세	6.8	7.4	8.3	10.4	15.0	4.4
부가가치세	67.1	70.0	70.8	64.9	71.2	20.7
개별소비세	9.9	10.5	9.7	9.2	9.4	2.7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5.3	14.6	13.9	16.6	4.8
관세	8.5	8.8	7.9	7.1	8.2	2.4
종합부동산세	1.7	1.9	2.7	3.6	6.1	1.8
주세	3.0	3.3	3.5	3.0	2.7	0.8
기타	18.6	21.1	20.2	24.8	30.4	8.8



Tax Statistics 2022

#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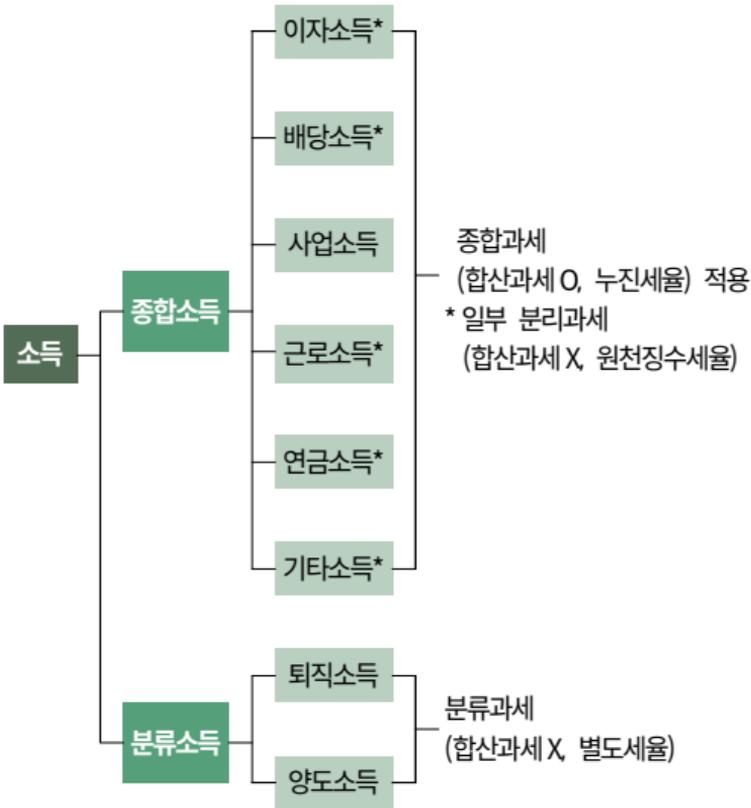
국 세  
소득세



## 11 소득세 과세체계

### ●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근로·이자 등 8가지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리과세

- 종합과세: 과세기간 중 발생소득을 합산, 누진세율 적용
  - \* 분리과세: 일부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①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
    - ②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
    - ③ 의료목적 등 연금소득 3~5%
    - ④ 복권당첨금 등 20%/30%
- 분류과세: 소득이 장기간 집적·형성된 점을 감안, 별도 과세



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 <sup>1)</sup>	퇴직소득금액 <sup>2)</sup>	양도소득금액 <sup>3)</sup>
(-) 종합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sup>4)</sup>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sup>5)</sup> 적용)	× 양도소득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감면
= 종합소득 결정세액	= 퇴직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주: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

2.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4.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배수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도출

5.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환산배수(12배)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함

## 12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 ● 소득공제

- 단,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조특법 제132조의2)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li> <li>• 추가공제: 경로(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 공제(100만원)</li> </ul>
연금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 관련 법상 기여금 및 개인부담금(전액)</li> </ul>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소득자만 해당(이자비용 상당액, 200만원내)</li> </ul>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li> <li>•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근로자, 40%)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1주택 근로자) 등</li> </ul> <p>* 단, 한도 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①,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①+②, 500만원</p>
조특법상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0%)</li> <li>•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차감 후 15~40%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0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5% 초과 사용분) 10% ('21년 한시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 수준별 연 200~300만원(단,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20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 100만원 추가)</li> <l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 4천만원/1억원 기준, 500만원/300만원/200만원)</li> <li>•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2년내 10%)</li> <li>•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전액) * 출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함 연 400만원 (창업·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li> </ul>

주: 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7.1부터 시행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근로소득세액공제)</b> 산출세액 130만원 기준 55%/30% * 단, 50~74만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녀세액공제)</b> 다자녀(2자녀 각 15만원, 3자녀부터 30만원) 출산 및 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 이하 아동은 다자녀공제 미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특별세액공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의 15% 공제 * 단,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li> <li>②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지출액의 12% 공제 * 단, 장애인 15% 공제</li> <li>③ 표준세액: 근로소득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공제 * 단, 성실사업자 12만원 공제</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금계좌세액공제)</b>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15% 단, 소득규모별 300~400만원 한도 * 종합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금 저축계좌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시 900만원(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적용)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배당세액공제)</b> 종합소득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의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장세액공제)</b> 간편장부 사업자의 복식기장 시 산출세액 20% * 단, 100만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자신고 공제)</b> 전자신고된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금영수증가맹점 공제)</b> 발급 건당 2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해손실세액공제)</b> 재해 시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국납부세액공제)</b>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국외 원천소득의 비중만큼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타 조특법상 세액공제)</b>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R&amp;D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li> </ul>
	세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특법상 세액감면)</b>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조합 배당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등</li> </ul>	

## 13 소득세 세율

### ● (소득세 세율) 8개 과세표준 구간, 초과누진세율

(단위: %)

과세표준 구간	현행
0 ~ 1,200만원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 ●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양도차익에 다르게 적용

(단위: %)

구분		현행	
토지 · 건물 · 부동산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2년 보유	토지: 40, 주택: 60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7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30%p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20%p * 조정대상지역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기본세율 +10%p 70	
기타자산		기본세율	
주식	대주주 (상장·비상장)	대기업 1년 미만	30
		대기업 1년 이상	3억이하: 20, 3억초과 25
	소액주주 (비상장)	중소기업	3억이하: 20, 3억초과 25 * 2011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20 10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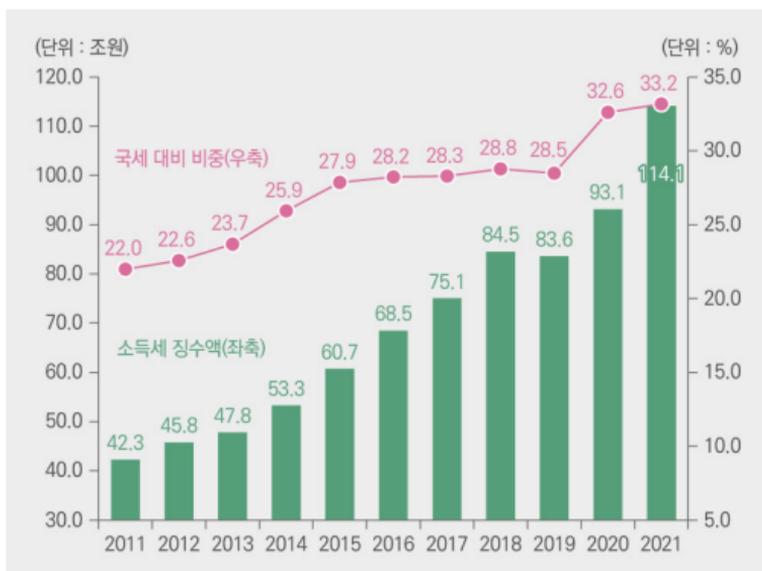
- 주: 1. 토지·건물·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21.6.1부터 적용  
 2. 기본세율은 현행 6~45%의 누진 소득세율을 뜻함  
 3. 주택은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을 포함  
 4.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및 일부 1세대 2주택(이사·상속·결혼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등은 비과세

## 14 소득세수 현황

● 소득세는 2021년 114.1조원 전체 국세대비 33.2%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소득세(B)	비중(B/A)
2012	203.0	45.8	(22.6)
2013	201.9	47.8	(23.7)
2014	205.5	53.3	(25.9)
2015	217.9	60.7	(27.9)
2016	242.6	68.5	(28.2)
2017	265.4	75.1	(28.3)
2018	293.6	84.5	(28.8)
2019	293.5	83.6	(28.5)
2020	285.5	93.1	(32.6)
2021	344.1	114.1	(33.2)



## 15 근로소득세 과세 현황

### ● 신고인원은 2020년 소득 기준 1,950만명 평균 실효세율은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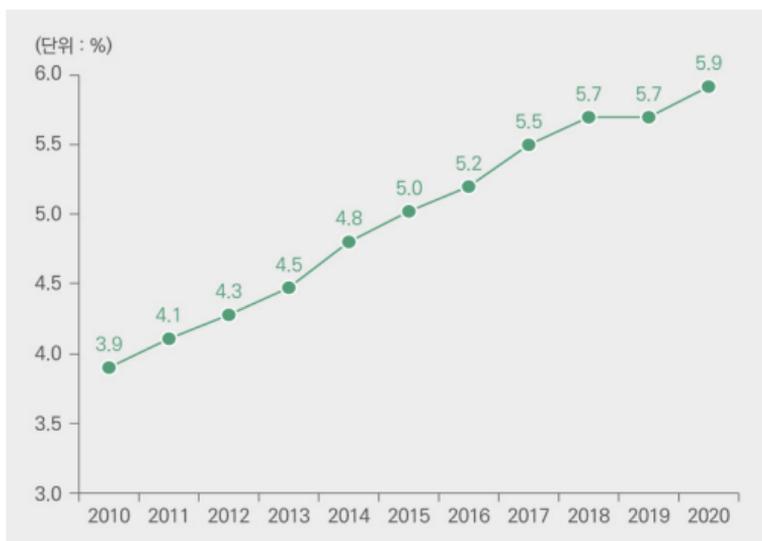
• 실효세율(%) = (결정세액/총급여액) × 100

※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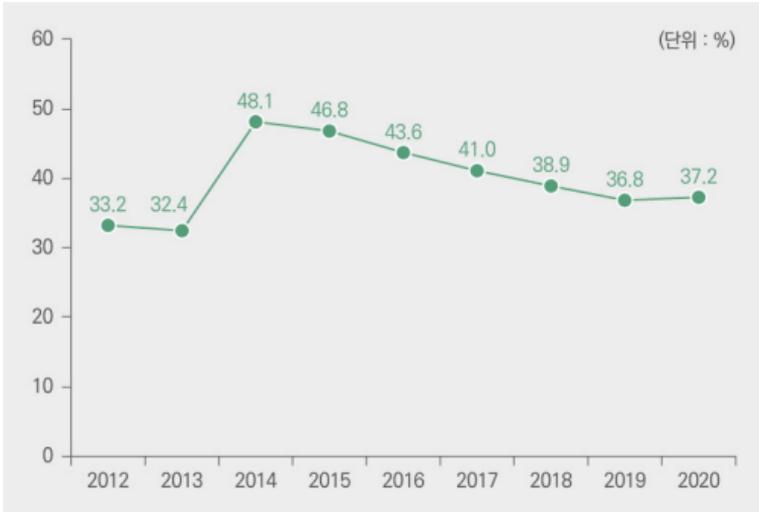
(단위: 만명, 조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총급여액 (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952	148.2	0.3	0.2
~4,600만원	779	348.2	10.2	2.9
~8,800만원	166	150.4	13.1	8.7
~1.5억원	38	53.9	8.2	15.1
~3억원	11	24.8	5.6	22.8
~5억원	2.0	8.5	2.4	28.6
~10억원	0.9	6.2	2.0	32.6
10억원 초과	0.3	6.1	2.3	37.4
합계 및 평균	1,950	746.3	44.2	5.9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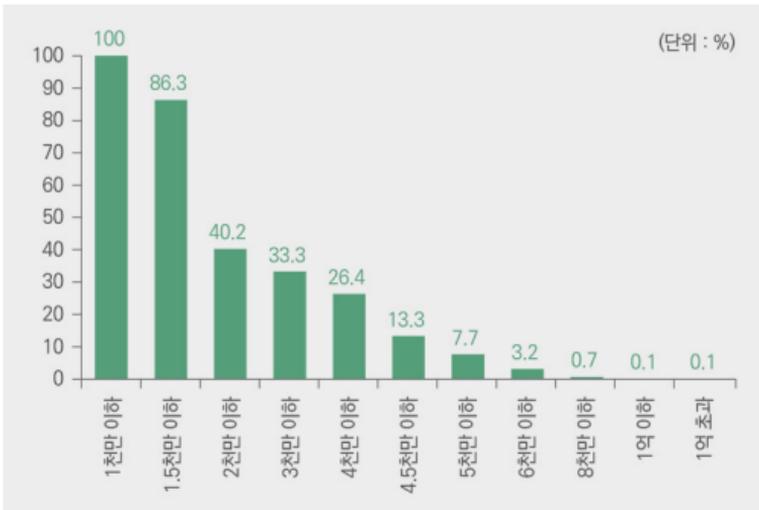
##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주: 근로소득 기준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주: 2020년 총급여액 기준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6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과표 개수	2010		2020	
	국가수	국가명	국가수	국가명
1개	5개국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3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2개	4개국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6개국	덴마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3개	5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3개국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영국
4개	8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2개국	벨기에, 뉴질랜드
5개	6개국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1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6개	3개국	이스라엘, 일본, 미국	0개국	-
7개	0개국	-	8개국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포르투갈, 미국
8개	3개국	칠레, 멕시코, 포르투갈	0개국	-
11개	1개국	스위스	2개국	멕시코, 스위스
17개	1개국	룩셈부르크	0개국	-
23개	0개국	-	1개국	룩셈부르크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2022.14. 기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7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 ● (중앙정부기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고세율 42%는 OECD 국가 중 14위 수준

• 2020년 OECD평균 최고세율 35.9%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랑스	41.0	45.0	45.0	45.0	45.0	45.0
독일	45.0	45.0	45.0	45.0	45.0	45.0
일본	40.0	40.0	40.0	40.0	45.0	45.0
영국	50.0	50.0	45.0	45.0	45.0	45.0
이탈리아	43.0	43.0	43.0	43.0	43.0	43.0
한국	35.0	38.0	38.0	38.0	38.0	38.0
미국	35.0	35.0	39.6	39.6	39.6	39.6
캐나다	29.0	29.0	29.0	29.0	29.0	33.0
G7평균	40.4	41.0	40.9	40.9	41.7	42.2
OECD평균	34.5	35.0	35.5	35.5	35.5	35.8

주: ( )는 OECD 35개국 중 순위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2022.2.14. 기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2017	2018	2019		2020	
프랑스	45.0	45.0	45.0	(7)	45.0	(7)
독일	45.0	45.0	45.0	(7)	45.0	(7)
일본	45.0	45.0	45.0	(7)	45.0	(7)
영국	45.0	45.0	45.0	(7)	45.0	(7)
이탈리아	43.0	43.0	43.0	(13)	43.0	(13)
한국	40.0	42.0	42.0	(14)	42.0	(14)
미국	39.6	37.0	37.0	(17)	37.0	(19)
캐나다	33.0	33.0	33.0	(21)	33.0	(22)
G7평균	42.2	41.9	41.9	-	41.9	-
OECD평균	35.7	35.7	35.9	-	35.9	-

## ● (지방세 등 포함기준<sup>1)</sup>) 2020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46.2%는 OECD 국가 중 19위 수준

• 2020년 OECD평균 최고세율 42.6%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본	50.0	50.0	50.8	50.8	55.9	55.9
프랑스	50.5	54.4	54.5	54.5	54.5	54.5
캐나다	46.4	48.0	49.5	49.5	49.5	53.5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이탈리아	47.3	47.3	47.3	47.8	48.8	48.8
미국	41.9	41.8	46.3	46.3	46.3	46.3
영국	50.0	50.0	45.0	45.0	45.0	45.0
한국	38.5	41.8	41.8	41.8	41.8	41.8
G7평균	47.6	48.4	48.7	48.8	49.6	50.2
OECD평균	40.3	40.8	41.7	41.8	41.9	42.3

주: (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11 및 2020년 기준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OECD국가들의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소득세와 소득세에 부과되는 각종 부가세(surtax) 포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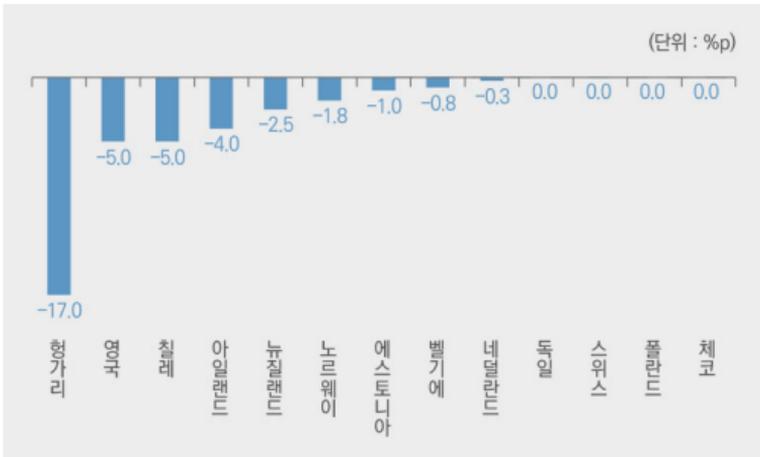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순위		
					2011	2020	변동
일본	55.9	55.9	55.9	55.9	(6)	(1)	5↑
프랑스	54.5	55.4	55.4	55.4	(5)	(3)	2↑
캐나다	53.5	53.5	53.5	53.5	(15)	(6)	9↑
독일	47.5	47.5	47.5	47.5	(12)	(15)	3↓
이탈리아	47.2	47.2	47.2	47.2	(13)	(16)	3↓
미국	46.3	43.7	43.7	43.7	(20)	(22)	2↓
영국	45.0	45.0	45.0	45.0	(6)	(21)	15↓
한국	44.0	46.2	46.2	46.2	(26)	(19)	7↑
G7평균	50.0	49.7	49.7	49.7			
OECD평균	42.1	42.2	42.5	42.6			

● (최고세율 변화) 2011년 vs. 2020년

- 세율 인상 19개국
- 세율 인하 10개국, 세율 유지 8개국
- ▶ 세율 인상 19개국: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 ▶ 세율 인하 10개국: 헝가리, 영국 등
- ▶ 세율 유지 8개국: 독일 등



주: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

## 18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 ● 2020년 기준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8.3%

- 2020년 OECD평균 8.3%
- 우리나라는 2013년 3.6%에서 2020년 5.3%로 상승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캐나다	11.3	11.4	12.1	11.9	11.9	12.0	12.2	12.5
이탈리아	5.6	5.7	5.8	5.7	5.9	6.1	11.0	11.5
미국	7.9	8.0	8.1	8.0	8.1	8.1	10.3	10.5
독일	6.0	5.9	5.7	5.8	6.2	6.3	10.6	10.4
영국	9.9	10.1	10.6	10.4	10.4	10.0	9.0	9.5
프랑스	9.6	9.7	9.9	10.0	10.3	10.5	9.3	9.6
일본	3.6	3.8	4.1	4.4	4.5	4.9	5.9	6.0
한국	3.6	3.6	3.9	4.0	3.8	4.1	4.8	5.3
OECD평균	7.9	8.0	8.1	8.0	8.1	8.1	8.0	8.3

주: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호주, 그리스, 뉴질랜드)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Tax Database(2022.14. 기준)

## 19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 ●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단위: %)

2012년		2014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2017년		2018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2021년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주: 빨간색은 세율 인상 부분임

## ● 금융소득 과세강화

-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완화(~'22.12.31)

(지분율, 시가총액)

시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
1999.1.	5%	5%		
2000.1.	3% 100억원	3% 100억원		
2005.8.	(동일)	5% 50억원		
2013.7.	2% 5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2016.4.	1% 25억원	2% 20억원	(동일)	(코스피 동일)
2017.1.	(동일)	(동일)	(동일)	4% 25억원
2018.4.	1% 15억원	2% 15억원	(동일)	4% 15억원
2020.4. ~ 2022.12.	1% 10억원	2% 10억원	(동일)	4% 10억원

-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인상

중소기업대주주	~2015	2016~2019	2020~
세율	10%	20%	3억 이상 20% 3억 초과 25%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20% 적용  
(2016. 1.1. 이후 75%내 탄력운용)

•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23. 1.1. 시행)

	신설
<b>과세방법</b>	•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적용
<b>과세표준</b>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b>이월공제</b>	• 결손금 이월공제 5년 허용
<b>기본공제</b>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 250만원
<b>세율</b>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b>신고납부</b>	•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반기별) 과세종료 또는 납세의무자 예정신고

• 가상자산소득 과세 도입('23. 1.1. 시행)

	신설
<b>과세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으로 규정, 분리과세 적용</li> </ul>
<b>소득금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금액 = 가상자산 양도금액 - 필요경비*</li> <li>* 필요경비: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li> <li>** 2023년 1월 1일 이전 취득가액 = max(2022.12.31. 시가, 실제 취득가액), 그 이후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 적용</li> </ul>
<b>산출세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li> <li>• 비거주자: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li> </ul>
<b>손익통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 동안 손익 통산 허용</li> </ul>
<b>세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li> </ul>
<b>신고납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차년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 (원천징수하지 않음)</li> <li>• 비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 납부</li> </ul>

## ● 근로장려세제 확대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금액 각각 200만원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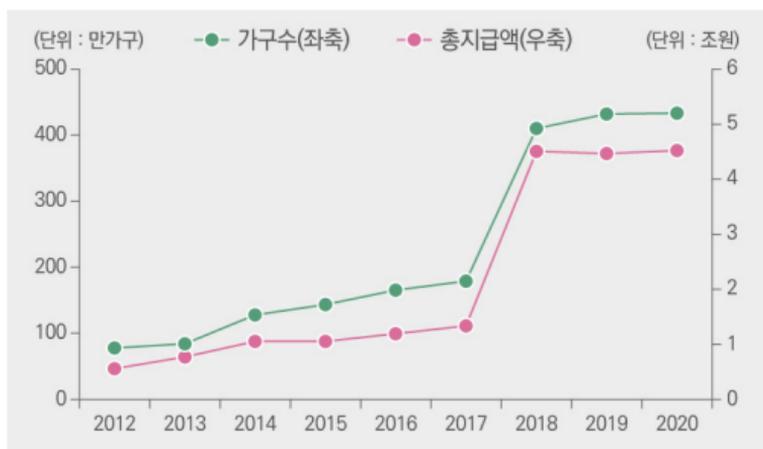
		2021년 이전(개정전)	2022년 이후(현행)
<b>연령요건</b>		연령기준 폐지	연령기준 폐지
<b>재산요건</b>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b>소득 요건</b>	<b>단독</b>	2,0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b>홀벌이</b>	3,0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b>맞벌이</b>	3,6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b>최대 지급액</b>	<b>단독</b>	150만원	150만원
	<b>홀벌이</b>	260만원	260만원
	<b>맞벌이</b>	300만원	300만원
<b>지급방식</b>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귀속연도 기준)

연도	가구수 (만가구)	가구당금액 (만원)	총 지급액 (억원)
2012	78	72	5,618
2013	85	92	7,745
2014	128 [107]	82 [61]	10,566 [6,579]
2015	144 [94]	73 [60]	10,574 [5,700]
2016	166 [106]	72 [53]	11,967 [5,637]
2017	179 [94]	75 [52]	13,381 [4,917]
2018	410 [88]	110 [86]	45,049 [7,544]
2019	432 [74]	103 [87]	44,683 [6,457]
2020	426 [71]	105 [86]	44,732 [6,066]

주 [ ]는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개편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 2천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14%)\*가 시행됨

\* 분리과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

###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2020년 기준>

구분		월세	전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 보유자	선택적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선택적 분리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하: 비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상: 선택적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1주택 보유자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하: 비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상: 종합과세

주: 1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2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합산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공제율: 20% → 30%
-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 20%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500만원)에 대해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시 90.9%(100/110), 10만원 초과 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적용

Tax Statistic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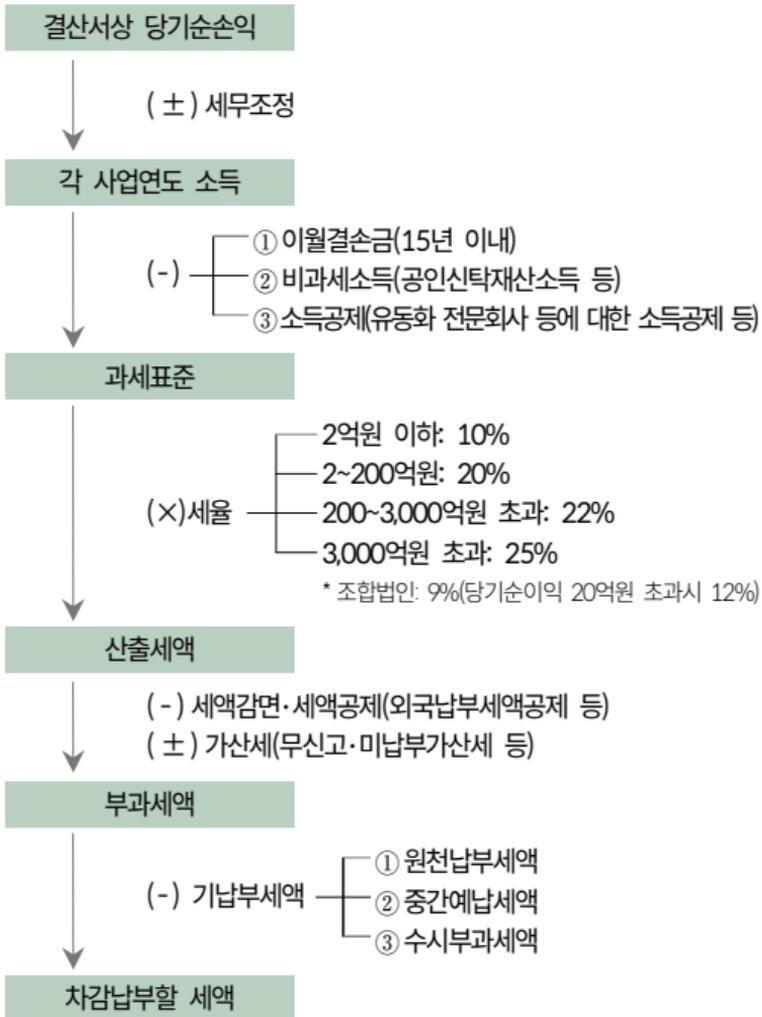
# Part 2

국 세  
법인세



## 20 법인세 과세체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양도소득 × 세율\*

\* 비사업용토지: 10%(미등기 40%)

주택·별장: 20%(미등기 40%)

## 21 법인세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내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li> </ul>
	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li> </ul>
과세 대상	내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li> <li>※ 외국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li> </ul> </li> </ul>
	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li> <li>※ 과세소득: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 10가지 (「법인세법」 제93조)</li> </ul> </li> </ul>
과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감산조정</li> <li>(예) (+) 의제배당, 업무무관 비용 등</li> <li>(-) 수입배당금, 일시상각충당금 등</li> </ul> </li> </ul>
과세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li> </ul>

### <국제비교>

글로벌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대상 포함 후 외국납부세액공제</li> <li>•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등</li> </ul>
영토주의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li> <li>•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li> </ul>

## 22 법인세 최저한세

###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1991년 시행, 각종 조세감면에 대해 총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
-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과세·감면·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 ※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이월공제 가능

#### [해외사례]

- 대만(과세표준 12%), 오스트리아(법인유형별 최저납부액), 룩셈부르크(자산규모별 최저납부액), 헝가리(매출액 2%) 등
  - ※ 일본은 감면별로 산출세액의 10~20% 수준에서 세액공제·감면의 한도 설정

- 일부 세액공제·감면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위: 억원)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항목	중소기업	일반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1,561	37,703
일반R&D비용 세액공제	12,805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54	-
수도권밖 이전 공장·본사 세액감면	234	6,207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222	3
외국인투자 법인세 세액감면 등	18	738

주: 2020년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3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 2008~2010년 인하된 후 2012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 2018년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4단계 누진세율 구조)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현행)
1억원	25%	11%	11%	10%	10%	10%
1~2억원						
2~200억원		25%	22%	22%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2008~2010년 인하, 2013~2014년 대기업 중심 세율 인상

※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현행)
100억원	13%	13%	11%	10%	10%	10%
100~1,000억원				11%	12%	12%
1,000억원 초과	15%	15%	14%	14%	16%	17%
중소기업	10%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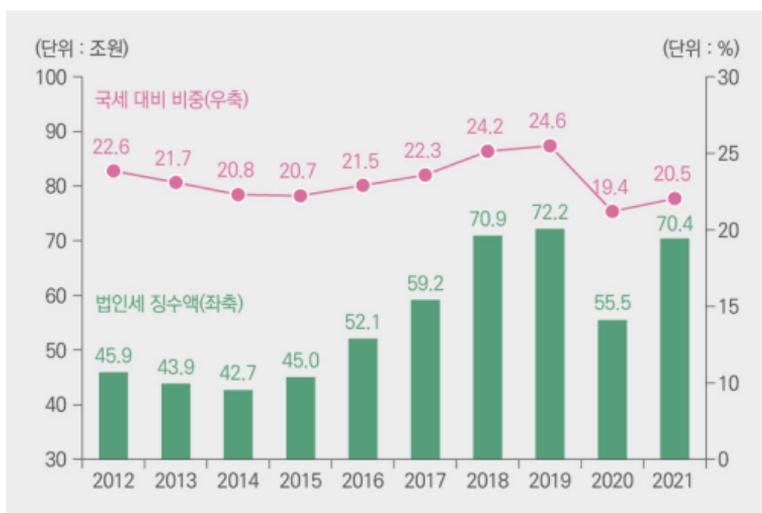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 24 법인세수 현황

● 법인세는 2021년 70.4조원, 국세대비 20.5%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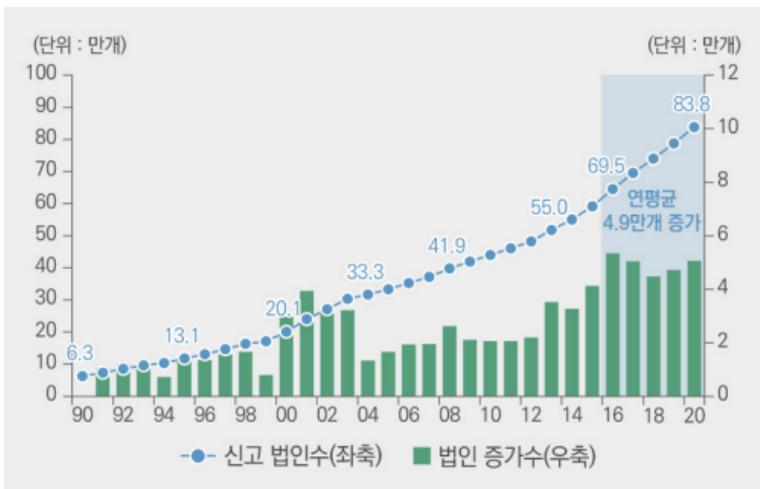
연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2)
2019	293.5	72.2	(24.6)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5 신고법인수 추이

● 신고법인수: 1990년 6.3만개 → 2020년 83.8만개



● 2020년 일반기업 7.6만개, 중소기업 76.2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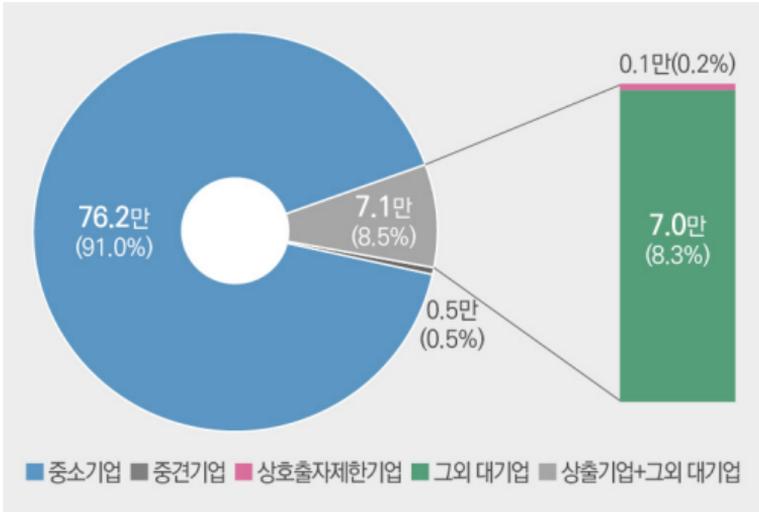


주: 2020년 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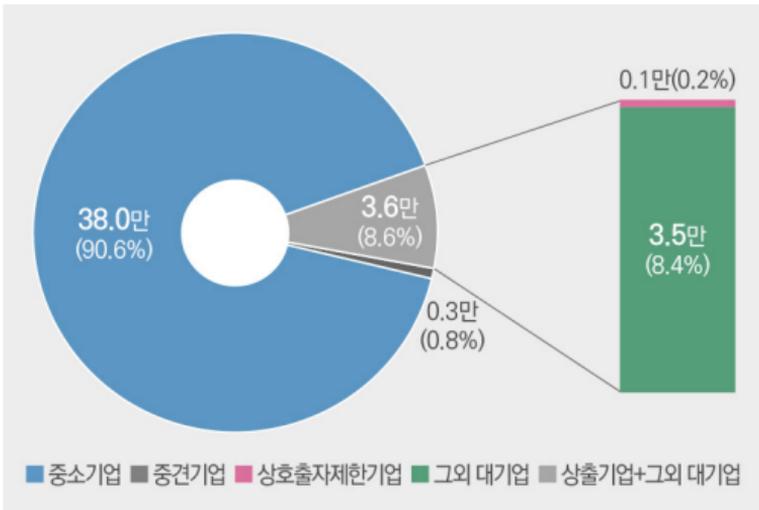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6 법인세 과세 현황

### ● 신고법인수 83.8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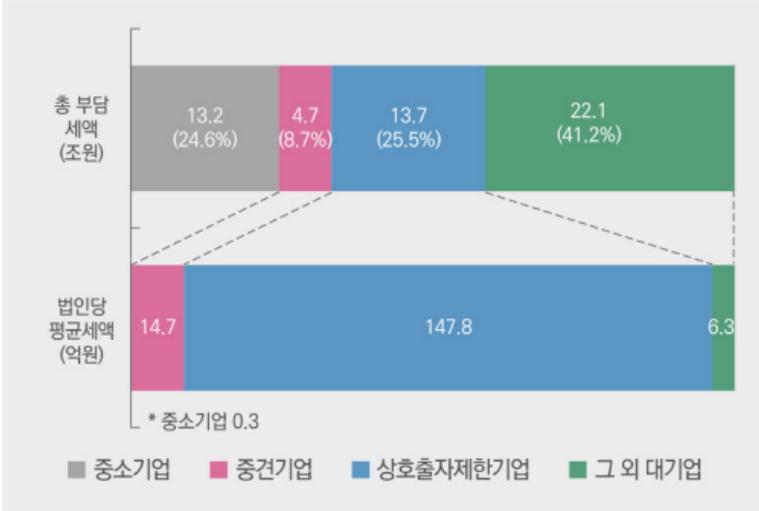
### ● 세부담 기업수 42.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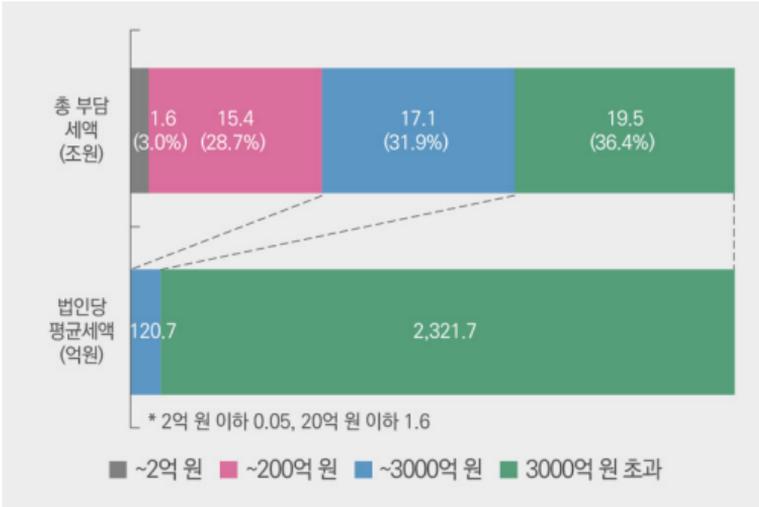
주: 2020년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기업규모별



## ● 과표구간별



주: 2020년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7 법인세 신고 현황: 기업규모별

(단위: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	상출	기타			
신고법인수	83.8	7.6	0.5	0.1	7.0	76.2	
후자법인수	53.2	5.2	0.3	0.1	4.8	48.0	
(비중)	(100.0)	(9.8)	(0.6)	(0.2)	(9.0)	(90.2)	
당기순이익	282.8	186.5	20.7	63.4	102.4	96.3	
각사업연도소득	339.6	224.6	27.0	79.3	118.2	115.1	
비과세*	4,765.4	4,091.6	57.9	111.5	3,922.1	673.8	
소득공제*	76,624.5	66,523.5	304.0	272.5	65,946.9	10,101.0	
과세표준	306.4	206.0	25.4	76.2	104.4	100.4	
산출세액	63.9	47.1	5.4	18.2	23.5	16.9	
공제·감면	(금액)	10.5	6.7	0.7	4.5	1.4	3.8
	(비중)	(100.0)	(63.6)	(7.1)	(43.1)	(13.5)	(36.4)
	법인당*	0.4	8.6	3.8	88.5	2.7	0.1
총부담세액	(금액)	53.6	40.4	4.7	13.7	22.1	13.2
	(비중)	(100.0)	(75.4)	(8.7)	(25.5)	(41.2)	(24.6)
	법인당*	1.3	10.3	14.7	147.8	6.3	0.3
명목세율(A)	20.9	22.8	21.2	23.9	22.5	16.8	
실효세율(B)	17.5	19.6	18.3	18.0	21.1	13.1	
세율감소(A-B)	3.4	3.2	2.9	5.9	1.3	3.7	

주: 1 2020년 신고기준(2019년 귀속)값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2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8 법인세 신고 현황: 과표구간별

(단위: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신고법인수	83.8	73.8	9.8	0.14	0.008	
흑자법인수	53.2	43.2	9.8	0.14	0.008	
(비중)	(100.0)	(81.2)	(18.5)	(0.3)	(0.0)	
당기순이익	282.8	52.1	93.1	67.2	70.4	
각사업연도소득	339.6	37.1	112.3	89.4	100.8	
비과세*	4,765.4	3,877.9	804.9	72.4	10.1	
소득공제*	76,624.5	66,674.1	7,937.3	2,013.1	-	
과세표준	306.4	17.7	104.7	84.6	99.3	
산출세액	63.9	1.9	19.0	18.8	24.3	
공제· 감면	전체	10.5	0.4	3.7	1.7	4.8
	(비중)	(100.0)	(3.6)	(35.1)	(16.0)	(45.4)
	법인당*	0.4	2.0	10.9	68.9	1,084.5
총 부담 세액	전체	53.6	1.6	15.4	17.1	19.5
	(비중)	(100.0)	(3.0)	(28.7)	(31.9)	(36.4)
	법인당*	1.3	0.2	45.4	540.6	4,217.5
명목세율(A)	20.9	11.0	18.1	22.2	24.4	
실효세율(B)	17.5	9.1	14.7	20.2	19.6	
세율감소(A-B)	3.4	1.8	3.5	2.0	4.8	

주: 1 2020년 신고기준(2019년 귀속)값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2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9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 2020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7.5%

-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산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 전년대비 하락

(단위: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
<b>전체</b>	16.1	16.6	17.2	17.6	19.1	17.5	1.4
<b>1억원 이하</b>	8.7	8.8	9.8	8.8	9.9	8.5	-0.2
<b>1~2억원</b>	8.3	8.3	8.4	8.3	8.1	8.0	-0.3
<b>2~5억원</b>	10.6	10.6	10.7	10.6	10.3	10.0	-0.6
<b>5~10억원</b>	13.1	13.4	13.4	13.3	12.8	12.5	-0.6
<b>10~20억원</b>	14.8	14.9	15.0	14.9	14.6	14.2	-0.6
<b>20~50억원</b>	15.8	16.0	16.3	16.3	16.1	15.7	-0.1
<b>50~100억원</b>	16.5	17.1	17.2	17.3	17.1	17.0	0.5
<b>100~200억원</b>	17.3	17.4	17.8	18.0	17.9	17.9	0.6
<b>200~500억원</b>	18.0	18.5	19.0	19.5	19.2	19.5	1.5
<b>500~1,000억원</b>	18.8	19.5	19.5	20.3	20.6	20.3	1.5
<b>1,000~5,000억원</b>	18.7	19.5	20.5	20.6	20.9	20.8	2.1
<b>5,000억원 초과</b>	16.4	17.2	18.0	18.5	22.6	19.4	3.0

주: 1 법인세 신고기준

2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서울: 2020년 명목최고세율 25.0%, 실효세율 17.5%



주: 1 법인세 신고기준

2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지방소득세 및 외국납부세액 미포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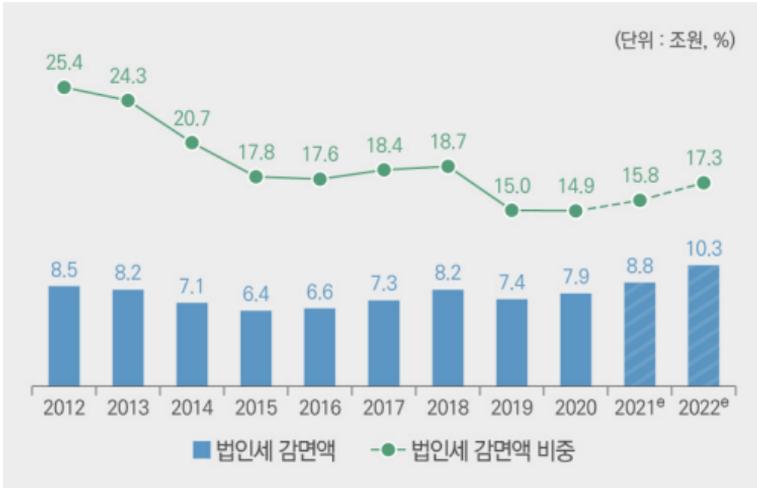
## ● 평균 실효세율 비교

	(1) 외국납부세액 제외		(2) 외국납부세액 포함		(3) 외국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수입금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	수입금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	수입금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
<b>2020년</b>	15.8	17.5	16.9	18.8	18.5	20.5
<b>2019년</b>	17.5	19.1	18.1	19.7	19.8	21.6
<b>2018년</b>	16.0	17.6	16.7	18.4	18.3	20.1
<b>2017년</b>	15.6	17.2	16.3	18.1	17.9	19.9
<b>2016년</b>	14.4	16.6	15.4	17.8	16.8	19.5
<b>2015년</b>	14.5	16.1	15.6	17.3	17.4	19.3

주: 법인세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법인세 감면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7.9조원('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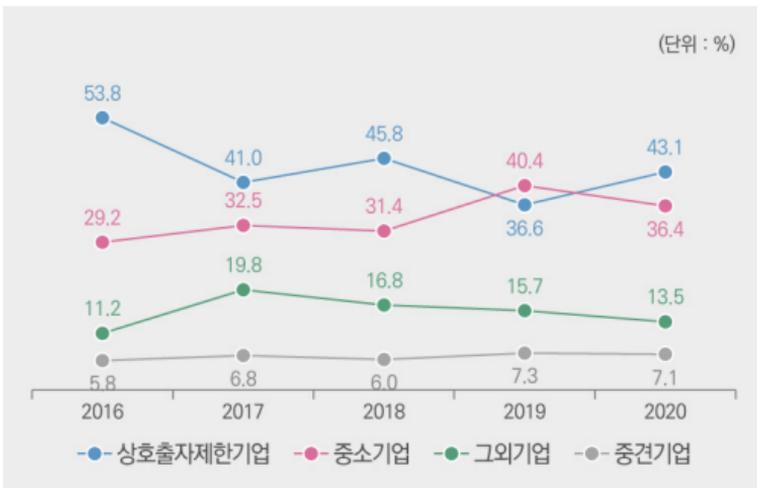
주: 1. 감면액 비중 = 총 국내 감면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중

2.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외된 금액

3. 2021년과 2022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점유비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1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과표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5개국	호주 <sup>1)</sup> , 오스트리아, 벨기에 <sup>2)</sup> , 캐나다 <sup>3)</sup> , 칠레, 콜롬비아 <sup>4)</sup> ,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sup>5)</sup> ,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sup>6)</sup> ,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sup>7)</sup> ,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sup>8)</sup> , 폴란드 <sup>9)</sup> , 포르투갈 <sup>10)</sup>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sup>11)</sup> , 미국
2개	1개국	네덜란드 <sup>12)</sup>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sup>13)</sup>
4개	1개국	한국

주: 특정 소득(체코, 아일랜드 등) 및 산업(콜롬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손실기업(이탈리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차등세율(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일본 등)은 단일세율로 분류, 지방세(Local tax)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surtax)을 제외한 중앙정부 법인세 기준의 과세표준 구간수임(2022년 기준)

- 1) 호주: 기본세율 30%, 5,000만 AUD 미만 소기업은 25%
- 2) 벨기에: 기본세율 25%, 10만 EUR 미만 소기업은 20%
- 3) 캐나다: 연방법인세 기본세율은 38%이지만 캐나다 내 발생소득에 대해 10%환급, 50만 CAD이하 소기업은 9%
- 4) 콜롬비아: 30%, 특정 서비스업은 9%
- 5) 프랑스: 기본세율 25%, 매출 1,000만 EUR 미만 중소기업은 15% 또는 25%
- 6) 아일랜드: 기본세율 12.5%, 영업외수입에 대한 세율은 25%
- 7) 일본: 기본세율 23.2%, 과세소득 800만엔 미만 소기업은 19%
- 8) 노르웨이: 기본세율 22%(금융기관 25%), 사발바르 소재 150만 NOK 미만 소기업은 16%
- 9) 폴란드: 기본세율 19%, 200만 EUR 미만 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은 9%
- 10) 포르투갈: 기본세율 21%, 2.5만 EUR 미만 중소기업 17%, 단, 부가세(surtax)로 과세소득에 따라 3%p, 5%p, 9%p 추가 과세
- 11) 영국: 기본세율 19%, 석유산업 30% 또는 19%(소규모), 연수익 250만 GBP 이상 은행에 대해 8% 추가과세
- 12) 네덜란드: 39.5만 EUR 미만 15%, 39.5만 EUR 이상 25.8%
- 13) 룩셈부르크: 기본세율 15~17% (고용기금납입료와 지방세 고려 시 최고 24.94% 세율 적용)

자료: 각 국가의 과세관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2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 기준: 2021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국가 중 8위 수준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랑스	36.1	36.1	38.0	38.0	38.0	34.4
한국	22.0	22.0	22.0	22.0	22.0	22.0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27.5	27.5
일본	30.0	30.0	28.1	28.1	23.9	23.4
미국	35.0	35.0	35.0	35.0	35.0	35.0
영국	26.0	24.0	23.0	21.0	20.0	20.0
독일	15.8	15.8	15.8	15.8	15.8	15.8
캐나다	16.5	15.0	15.0	15.0	15.0	15.0
G7평균	26.7	26.2	26.1	25.8	25.0	24.5
OECD평균	23.7	23.5	23.7	23.4	23.5	23.3

주: ( )는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OECD 38개국 중 법인세율이 높은 순위  
 자료: OECD Tax Database(2022.2.23. 기준)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2.0%('11) → 25.0%('21)
- G7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6.7%('11) → 20.9%('21)
-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3.7%('11) → 21.5%('21)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44.4	34.4	34.4	32.0	28.4	(6)
22.0	25.0	25.0	25.0	25.0	(8)
24.0	24.0	24.0	24.0	24.0	(13)
23.4	23.2	23.2	23.2	23.2	(15)
35.0	21.0	21.0	21.0	21.0	(19)
19.0	19.0	19.0	19.0	19.0	(27)
15.8	15.8	15.8	15.8	15.8	(32)
15.0	15.0	15.0	15.0	15.0	(33)
25.2	21.8	21.8	21.4	20.9	
23.1	22.5	22.2	21.6	21.5	

● 지방세<sup>2)</sup>포함기준: 2021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7.5%는  
OECD 국가 중 11위 수준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독일	29.6	29.6	29.6	29.7	29.8	29.8
일본	39.5	39.5	37.0	37.0	32.1	30.0
프랑스	36.1	36.1	38.0	38.0	38.0	34.4
이탈리아	31.4	31.3	31.3	31.3	31.3	31.3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캐나다	27.7	26.1	26.2	26.2	26.7	26.7
미국	39.2	39.1	39.0	39.1	39.0	38.9
영국	26.0	24.0	23.0	21.0	20.0	20.0
G7평균	32.8	32.2	32.0	31.8	31.0	30.2
OECD평균	25.4	25.3	25.5	25.2	25.2	24.9

주: ( )는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OECD 38개국 중 법인세율이 높은 순위  
자료: OECD Tax Database(2022.2.23. 기준)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가 포함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지방세율은 주별 지방세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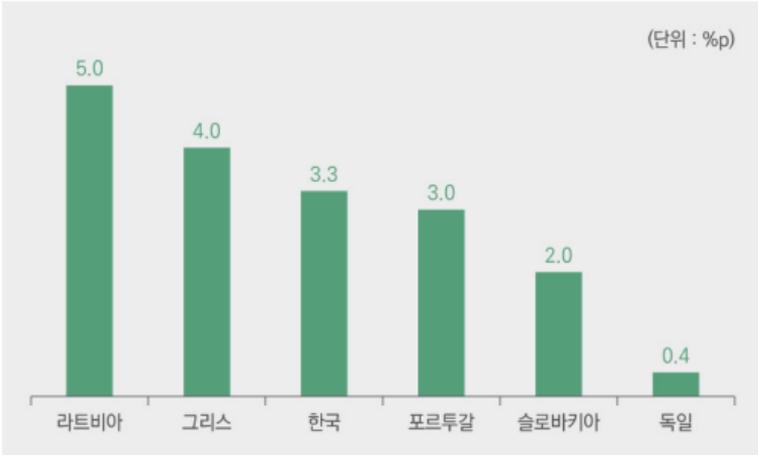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4.2%(’11) → 27.5%(’21)
- G7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32.8%(’11) → 26.7%(’21)
-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5.4%(’11) → 23.2%(’21)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순위		
					'11	'21	변동
29.9	29.9	29.9	29.9	29.9	(11)	(6)	5↑
30.0	29.7	29.7	29.7	29.7	(1)	(7)	6↓
44.4	34.4	34.4	32.0	28.4	(3)	(8)	5↓
27.8	27.8	27.8	27.8	27.8	(6)	(10)	4↓
24.2	27.5	27.5	27.5	27.5	(23)	(11)	12↑
26.7	26.8	26.6	26.2	26.2	(16)	(12)	4↑
38.9	25.8	25.9	25.8	25.8	(2)	(13)	11↓
19.0	19.0	19.0	19.0	19.0	(18)	(31)	13↓
31.0	27.6	27.6	27.2	26.7			
24.8	24.2	23.9	23.3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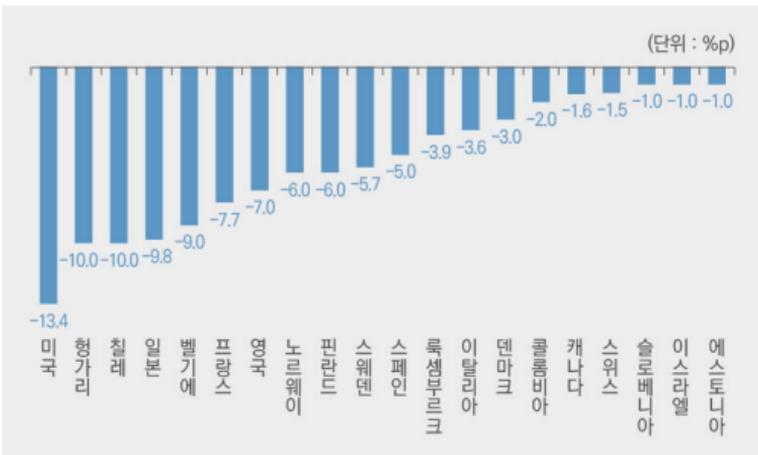
## ● (최고세율 변화, 지방세 등 포함) 2011년 vs. 2021년

• 세율 인상 6개국: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등



▶ 세율 유지 12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멕시코, 네덜란드 등

▶ 세율 인하 20개국: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2022.2.23. 기준)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3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 2020년 기준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3.4%

- 2020년 OECD평균 2.7%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캐나다	3.3	3.4	3.8	3.9	4.1	4.2	4.2
한국	3.0	3.1	3.4	3.6	4.2	4.3	3.4
일본	3.9	3.7	3.6	3.7	4.1	3.8	3.1
영국	2.4	2.3	2.6	2.6	2.6	2.3	2.3
프랑스	2.3	2.1	2.0	2.3	2.1	2.2	2.3
이탈리아	2.2	2.0	2.1	2.1	1.9	2.0	2.1
독일	1.7	1.7	2.0	2.0	2.1	2.0	1.7
미국	2.3	2.1	2.0	1.5	1.3	1.3	1.3
OECD평균	2.8	2.8	2.9	3.0	3.1	3.0	2.7

주: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2.2.22 기준)

## 34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등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 (국가전략기술 R&D) 30~50% (신성장·원천 대비 +10%p)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10~20%(신성장·원천 대비 +3~4%p)
    - \* 적용기한: 2024.12.31.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12.31.

### ●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정비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액 한시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21~'22년 고용분 한시) 수도권 외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 1인당 세액공제액 100만원씩 상향
    - 적용기한: 2024.12.31.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요건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요건강화) 특수관계인 배제,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
    - 적용기한: 2022.12.31.
-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3.12.31.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24.12.31.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경력단절인정 기간을 3~15년에서 2~15년으로 확대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 8,000만원
- 적용기한: 2024.12.31.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요건: 현금성결제비율 삭제, 어음결제 요건 완화
- 공제율: 지급기한 16~30일 구간 신설 및 공제율 0.05~0.3%p 상향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가산세 신설

- (미제출가산세) 손금산입액 전체의 1%
- (불성실 신고 가산세) 손금산입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Tax Statistics 2022

# Part 2

국 세

부가가치세



## 35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세율은 10% 단일세율

- 단, 수출재화 등 영세율 적용, 기초생활필수품 등 면제

매출세액	$\begin{aligned}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 + \text{예정신고누락분} \\ & \pm \text{대손세액 가감} \\ & \dots\dots\dots \\ & = \text{매출세액} \end{aligned}$
매입세액	$\begin{aligned} & \text{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 + \text{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text{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dots\dots\dots \\ & = \text{매입세액} \end{aligned}$
최종 납부세액	$\begin{aligned} &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 \dots\dots\dots \\ & - \text{각종 공제감면 세액} \\ & + \text{각종 가산세액} \\ & \dots\dots\dots \\ & = \text{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end{aligned}$

●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 수입업자

사업자	세부 구분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 공급업자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용역 공급업자
수입자	국외거주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수입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

구분		과세 내용
일반 과세자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
	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간이 과세자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4,800~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제외)
	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36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재화·용역 공급시 영의 세율(0%) 적용
-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세

구분	영세율	면세
납세의무	있음	없음
적용목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촉진	부가가치 구성요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기초생활품 등), 조세정책상의 목적
사업자의 협력의무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	납세의무자 아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없음
거래징수	매출 면세 : 영의 세율로 매입자 거래징수 하지 않음	면세 : 과세대상거래 아님
	매입 과세 : 환급 또는 매출세액공제	과세 :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특징	완전면세	부분면세

##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초 생활 필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공식료품</li> <li>•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li> <li>• 수돗물</li> <li>• 연탄과 무연탄</li> <li>•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li> <li>• 대중여객운송용역(일반고속버스 포함)</li> <li>•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li> </ul>
국민 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건용역(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등 제외)과 혈액</li> <li>• 교육용역</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li> <li>•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li> <li>•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서의 입장</li> </ul>
생산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li> <li>• 금융·보험 용역(보호예수 등 일부 부수용역 제외)</li> <li>• 인적용역</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표 인지, 복권</li> <li>• 일정한 금액 이하의 담배</li> <li>•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li> <li>•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li> </ul>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농·임·어업용 및 연안선박용 석유류 등

## 37 부가가치세수 및 과세 현황

### ● 부가가치세는 2021년 71.2조원 전체 국세대비 20.7%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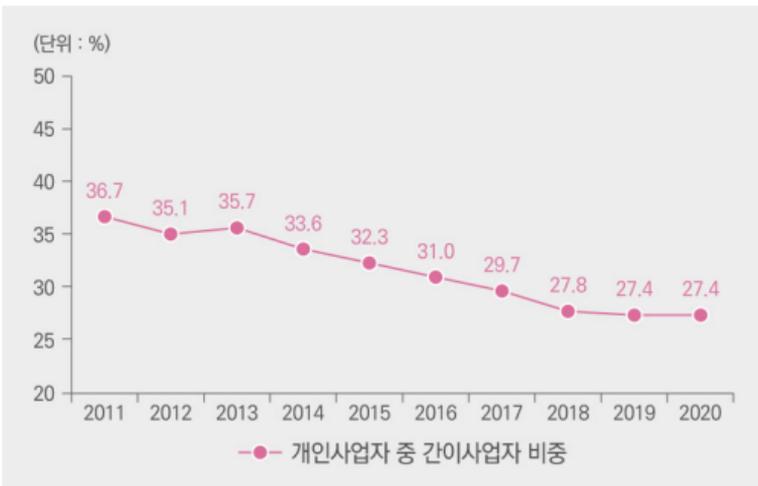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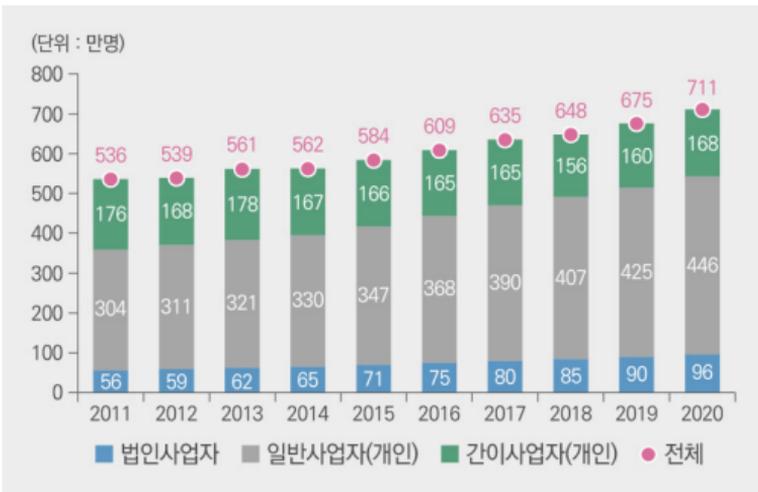
연도	국세(A)	부가가치세(B)	비중(B/A)
2012	203.0	55.7	(27.4)
2013	201.9	56.0	(27.7)
2014	205.5	57.1	(27.8)
2015	217.9	54.2	(24.9)
2016	242.6	61.8	(25.5)
2017	265.4	67.1	(25.3)
2018	293.6	70.0	(23.8)
2019	293.5	70.8	(24.1)
2020	285.5	64.9	(22.7)
2021	344.1	71.2	(20.7)



## ●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2011년 536만명에서 2020년 711만명으로 증가

- 사업자 유형별 인원:  
(’11) 법인 56만명 / 일반 304만명 / 간이 176만명  
(’20) 법인 96만명 / 일반 446만명 / 간이 168만명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 비중은 2011년 36.7%에서 2020년 27.4%로 감소

※ 간이사업자 비중=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 38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 ● 2021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회원국<sup>3)</sup> 중 34위 수준

- 2021년 OECD평균 부가가치세율 19.3%
- 주요국 중 이탈리아·프랑스·영국 20%대, 우리나라·독일·일본 10%대, 캐나다 5% 수준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탈리아	21.0	21.0	22.0	22.0	22.0	22.0
프랑스	19.6	19.6	20.0	20.0	20.0	20.0
영국	20.0	20.0	20.0	20.0	20.0	20.0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5.0	5.0	5.0	8.0	8.0	8.0
캐나다	5.0	5.0	5.0	5.0	5.0	5.0
주요국 평균	14.2	14.2	14.4	14.9	14.9	14.9
OECD평균	18.8	19.0	19.1	19.2	19.2	19.3

주: 1 ( )는 OECD 36개국\* 중 순위

\*미국(부가가치세 미운영), 코스타리카(2019년 부가가치세 도입)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22.10. 기준)를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 없이, 주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를 운영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2)10.0% → ('20)10.0%
- OECD평균 부가가치세율: ('12)18.8% → ('20)19.3%
- 주요국평균 부가가치세율: ('12)14.2% → ('20)15.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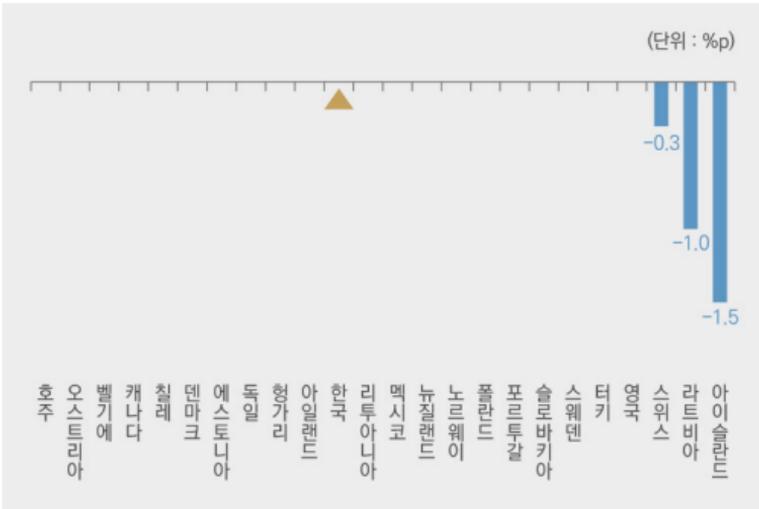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순위		
				'12	'21	변동
22.0	22.0	22.0	22.0	(14)	(12)	2↑
20.0	20.0	20.0	20.0	(21)	(23)	2↓
20.0	20.0	20.0	20.0	(20)	(22)	2↓
19.0	19.0	19.0	19.0	(23)	(26)	3↓
10.0	10.0	10.0	10.0	(33)	(34)	1↓
8.0	10.0	10.0	10.0	(36)	(34)	2↑
5.0	5.0	5.0	5.0	(36)	(36)	-
14.9	14.9	15.1	15.1			
19.3	19.3	19.3	19.3			

## ● (세율 변화) 2012년 vs. 2021년

- 세율 인상 12개국: 일본, 콜롬비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



- ▶ 세율 유지 19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한국 등
- ▶ 세율 인하 3개국: 스위스,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자료: OECD Tax Database(2022.10. 기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9 국제비교: 경감세율

(단위: %)

국가	표준/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 세율
오스트리아	20.0	10.0/13.0	19.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5.0
체코	21.0	10.0/15.0	-
덴마크	25.0	0.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4.0	6.0/13.0	4.0/9.0/17.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4.0	0.0/11.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탈리아	22.0	4.0/5.0/10.0	-
일본	10.0	8.0	-
한국	10.0	-	-
영국	20.0	0.0/5.0	-

주: 1 독일은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7~12월(6개월) 한시적으로 세율을 16%로 인하

자료: OECD Tax Database(2021.4.20 기준)

- 세법지식·계산능력·장부 기장능력·신고서 작성능력 등의 부족을 감안하여 도입 운영

국가	내용	
영국	등록면제	(대상) 연간 매출액이 85,000파운드* 미만 * 2020년 기준, 물가연동
	간이과세	(대상) 연간 15만 파운드 이하 (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 54개 업종, 18단계(4~14.5%) 구분
독일	납부면제	(대상) 전년도 매출액이 22,000유로 미만인면서 당해연도 매출액이 50,000 유로 미만
	간이과세	(대상) 전년도 매출액 61,356유로 미만 (매입세액*) 매출액×표준율 *법령 상, 실제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규정 (표준율) 60개 업종, 42단계(1.5~12.5%) 구분
일본	납부면제	(대상) 전년도 매출액 1,000만엔 미만
	간이과세	(대상) 전년도 매출액 5,000만엔 미만 (매입세액) 매출액×업종별 간주매입률×세율 (간주매입률) 9개 업종, 6단계(40~90%) 구분
한국	납부면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당해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 (부가가치율) 18개 업종, 5단계(15~40%) 구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1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 ● 2020년 기준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부담 4.2%

• OECD평균 6.9%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독일	7.0	6.9	7.0	7.1	6.6
프랑스	6.9	7.0	7.1	7.2	7.0
영국	6.9	6.9	7.0	7.0	6.6
일본	4.0	4.0	4.0	4.1	4.6
캐나다	4.5	4.5	4.5	4.5	4.5
한국	3.9	4.1	4.1	4.3	4.2
OECD평균	6.8	6.9	6.9	6.9	6.9 <sup>1)</sup>

주: 1)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는 2020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9년 자료를 적용하여 OECD평균 산출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2.2.10.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2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과세전환 및 면세대상 추가

	내용
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한 수익사업('07년)</li> <li>•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10년)</li> <li>• 치료 이외의 미용 성형 등의 의료용역('13년)</li> <li>• 대형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와 청소용역('14년)</li> <li>•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14년)</li> <li>• 안면윤곽술 등 미용성형수술('14년)</li> </ul>
영세율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11년)</li> <li>•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05년) 연장('19년)</li> </ul>
면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바우처 방식 복지서비스('08년)</li> <li>•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관련 설계용역('08년)</li> <li>• 노인복지주택 공급 일반 관리·경비용역 및 청소용역('10년)</li> <li>• 목재펠릿('10년)</li> <li>•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수급자 사육동물 진료영역('11년)</li> <li>• 친환경 전기버스('11년)</li> <li>•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12년)</li> <li>• 일반 고속버스('14년)</li> <li>• 연극 및 무용,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15년)</li> <li>• 액상형 분유, 어작업 대행용역 면제 확대('16년)</li> <li>•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19년)</li> </ul>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 면세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금액을 의제하여 공제

개정연도	면세농산물 등
'05. 3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6년말까지 면세농산물 5/105
'07. 4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8년말까지 면세농산물 6/106
'10. 3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과세유흥장소 4/104 (특례) '10년말까지 농산물 법인 6/106, 개인 8/108
'12. 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 4/104
'13. 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17. 1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9/109(~'19.12.31)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18. 1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9/109(~'19.12.31) 과세유흥장소 4/104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4/104, 과자점업·도정업 등 6/106
'19. 12	일반업종, 과세유흥장소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9/109(~'23.12.31)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4/104, 과자점업·도정업 등 6/106
개정연도	재활용폐자원
'06. 12	6/106, 중고품 10/110
'10. 1	106분의 6, 중고자동차: '10. 1. 1. ~ '10. 12. 31. 10/110 '11. 1. 1. ~ '13. 12. 31. 9/109
'14. 1	재활용품: '14. 1. 1. ~ '15. 12. 31. 5/105 '16. 1. 1. ~ '16. 12. 31. 3/103 중고자동차: '14. 1. 1. ~ '14. 12. 31. 9/109
'14. 12	중고자동차: '16. 12. 31. 9/109
'13. 2	재활용품: '17. 1. 1. ~ '18. 12. 31. 3/103 중고자동차: '17. 1. 1. ~ '18. 12. 31. 9/109
'17. 12	재활용품: '17. 1. 1. ~ '18. 12. 31. 3/103 중고자동차: '18. 1. 1. ~ '18. 12. 31. 10/110
'18. 12	재활용품: '19. 1. 1. ~ '21. 12. 31. 3/103 중고자동차: '19. 1. 1. ~ '19. 12. 31. 10/110
'19. 12	재활용품: '19. 1. 1. ~ '21. 12. 31. 3/103 중고자동차: '20. 1. 1. ~ '20. 12. 31. 10/110
'20. 12	재활용폐자원: 3/103(~'21.12.31.) 중고자동차: 10/110(~'22.12.31.)

## ● 매입자납부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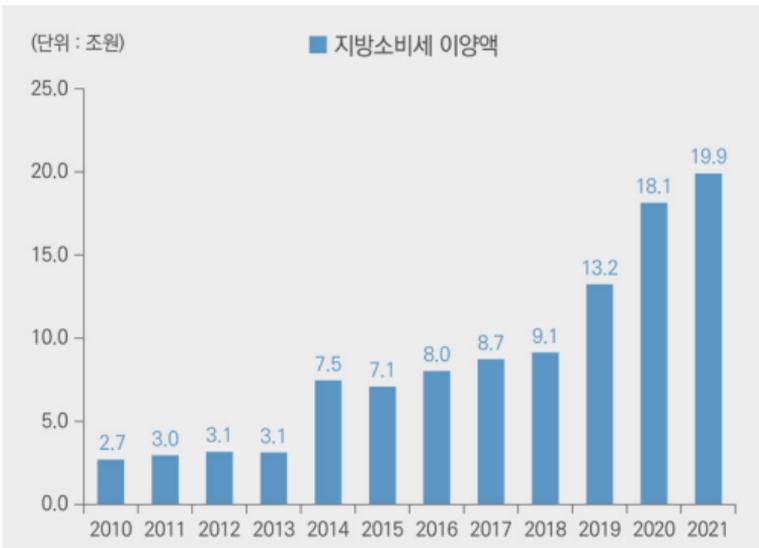
- 납세의무자(공급자)의 세금포탈\* 방지 목적
- 2008년 금지금 거래에 대한 제도 도입 후 확대

\* 금도매업자에 대한 탈루 추정 규모('03~'05상반기): 8,422억원

2008	2009	2014	2015	2016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배분

- 2010년 부동산 경기불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5%) 도입
- 2014년 부동산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5% → 11%)
- 2019~2020년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9년 11% → 15%, '20년 15% → 21%)
- 2022~2023년 2단계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22년 21% → 23.7%, '23년 이후 23.7% → 25.3%)



자료 기획재정부

# Part 2

국 세

상속세·증여세



## 43 상속세 과세체계

-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
-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등), 추정 상속재산(상속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 시 가산)

- 세율: 10~50% 초과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할증과세: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과세하되, 대습상속은 적용배제

### ● 비과세 및 공과금 등 공제

- 비과세: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유증시, 분묘 금양임야·묘토, 족보, 제구 등
- 공제: 공과금, 장례비용(500만원~1천만원),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채무

###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1년내 100%, 매 1년마다 10%씩 체감)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3%)

## ● 상속공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 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가액	30억원 (최소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	
	장애자공제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통계청 고시)	
일괄공제		5억원	
기업상속공제		200~500억원 한도	기업 영위기간별 차등적용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0억원
금융 재산 공제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전체	2억원
	2,000만원 ~1억원	2,000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훼손시 손실가액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시 주택가액 100% 공제	6억원

## 44 증여세 과세체계

### ● ‘유산취득세’ 방식: 수증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과세

- 과세대상: 거주자의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의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및 국외예적금
- 유·무형, 법률적·사실적, 직·간접을 불문한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 증여의제(명의 신탁 재산, 일감몰아주기 등)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 ● 서울: 10~50% 초과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sup>※</sup>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서울	10%	20%	30%	40%	50%

※ 할증과세: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과세하되, 대습상속은 적용배제

### ● 비과세

-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증여재산, 부양의무자 간 생활·교육비 등

###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10년간 합산기준 6억원 한도),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6촌(4촌) 이내 혈족(친족) (1천만원 한도)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1천만원 한도)

● 2004년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증여의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넓은 의미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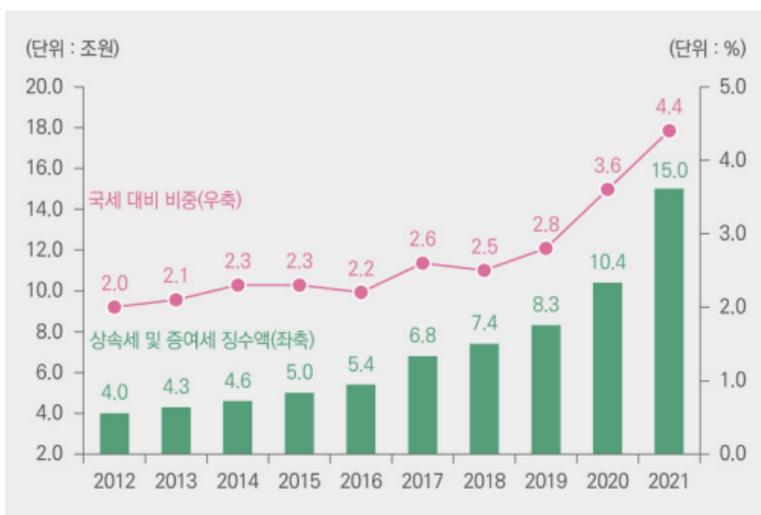
증여세				
민법상 증여	증여의제(14개), 증여추정(2개)			새로운 유형
계약에 의한 무상이전	일반거래를 통한 무상이전	자본거래를 통한 무상이전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사례	형식에 관계없이 직간접 무상이전
포괄주의	열거주의(~'98)			
	유형별 포괄주의('99~'03)			
	완전 포괄주의('04~)			

## 45 상속·증여세수 현황

### ●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1년 15조원 국세 대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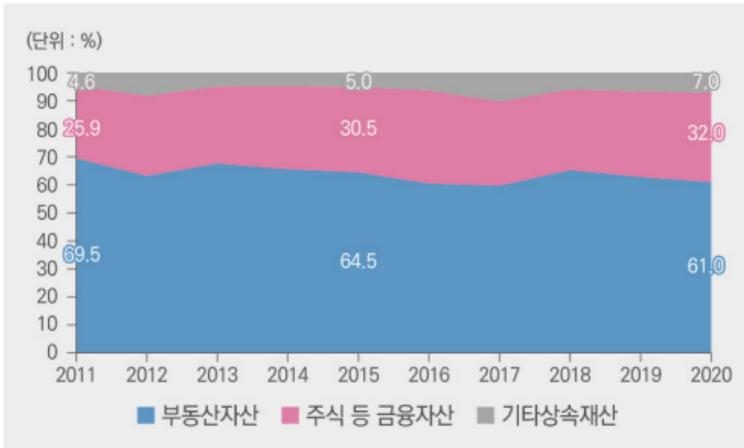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상속·증여세(B)	비중(B/A)
2012	203.0	4.0	(2.0)
2013	201.9	4.3	(2.1)
2014	205.5	4.6	(2.3)
2015	217.9	5.0	(2.3)
2016	242.6	5.4	(2.2)
2017	265.4	6.8	(2.6)
2018	293.6	7.4	(2.5)
2019	293.5	8.3	(2.8)
2020	285.5	10.4	(3.6)
2021	344.1	15.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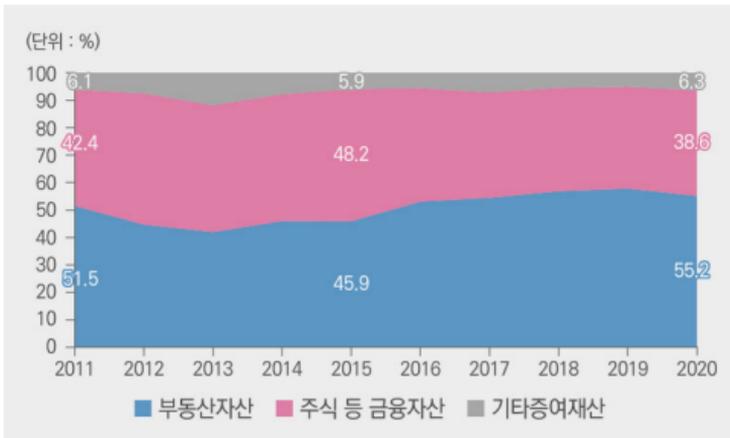
### ●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율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11)69.5% → ('20)61.0%
- 주식 등 금융자산: ('11)25.9% → ('20)32.0%
- 기타재산: ('11)4.6% → ('20)7.0%



### ●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율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11)51.5% → ('20)55.2%
- 주식 등 금융자산: ('11)42.4% → ('20)38.6%
- 기타재산: ('11)6.1% → ('2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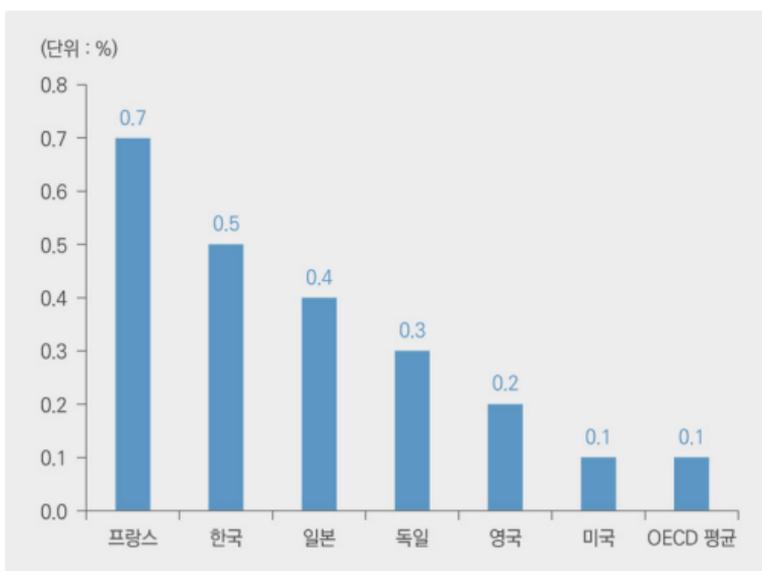
## 46 국제비교: 상속·증여세 부담

### ● 2020년 기준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0.5%

- 2020년 OECD 평균 0.1% 대비 0.4%p 가량 높음

(단위: %)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0.7	0.5	0.4	0.3	0.2	0.1	0.1



주: OECD Statistics의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2022.2.21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7 국제비교: 상속세제

### ● OECD 주요국의 상속세제 비교

국가	과세 방식	세율	기초공제액	누적(합산)제도
미국	• 유산세 방식	• 18~40% (12단계 누진 세율)	• 1,140만 달러	• 상속전 (전기간)에 증여된 재산
영국	• 유산세 방식	• 40%	• 32.5만파운드	• 상속 7년전에 증여된 재산
프랑스	• 유산 취득세 방식	• 직계: 5~45% (7단계 누진세율) • 형제: 5~45% (2단계 누진세율) • 4촌이내 친족: 55% 기타: 60%	• 직계: 10만유로	• 상속 15년 전에 증여된 재산
독일	• 유산 취득세 방식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7~30% (7단계 누진세율) • 형제, 양자녀, 양부모 등: 15~43% (7단계 누진세율) • 기타: 30~50% (2단계 누진세율)	• 배우자: 50만유로 • 자녀 : 40만유로	• 상속 10년 전에 증여된 재산
일본	• 법정 상속분 과세방식	• 10~55% (8단계 누진세율)	• 3,000만엔 + (600만엔×법정 상속인수)	• 상속 3년 전에 증여된 재산

### ●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 48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 최근 상속·증여세는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개정 추진
- 기업승계세제 확대
  - 2007년 이후 매년 대상요건 완화 및 공제금액 인상 등이 이루어졌고, 2021년 중견기업 대상 확대가 이루어짐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 요건 완화: 중소기업 공제비율 및 한도 상향 조정 (20% → 40%, 30억원 → 60~100억원), 사업영위기간 완화 (15년 → 10년)</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적용 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기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확대: 공제율 40% → 70% 공제한도 피상속인 기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 100~300억원</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 제외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 2,000억원 초과</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중소·중견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공제금액 및 한도 확대 (기업상속재산의 70% → 100%, 한도 경영 10년/15년/20년 이상, 100억원/150억원/300억원 → 200억원/300억원/500억원)</li> <li>•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여부 판단기준 신설: 근무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li> <li>• 기업상속공제 후 지분 감소시 추정배제 사유 추가: 균등 무상감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출자전환</li> <li>• 기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li> <li>• 고용유지의무 완화(총급여액 평균 80%이상 추가)</li> <li>• 기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 성실경영책임 강화</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매출액 3천억 → 4천억원</li> <li>•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조정: 15억원 → 20억원</li> </ul>

##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11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도입('15년), 대·중견기업 과세강화('17년)

2011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특수관계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2013	• 중소·중견기업 과세완화: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 비율 차등 (일반/중소·중견, 각각 30%/50%, 3%/10%)
2015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지배주주 주식보유 비율 기준 30%
2017	• 대·중견기업 과세강화: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인하 (대/중견, 각각 5%/0%, 20%/5%), 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거래액 1천억원 초과시 과세, 과세 중견·중소기업 범위 확대(자산 5조원 이상)
2018	•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 축소: 주식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2019	•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Tax Statistics 2022

# Part 2

국 세  
기타세목



## 49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 또는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 등을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부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석·귀금속, 시계, 모피: 기준가격</li> <li>• 석유류: 반출수량</li> <li>• 그 외: 반출가격</li> </ul>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입장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유흥음식 요금
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연간 총매출액

### ●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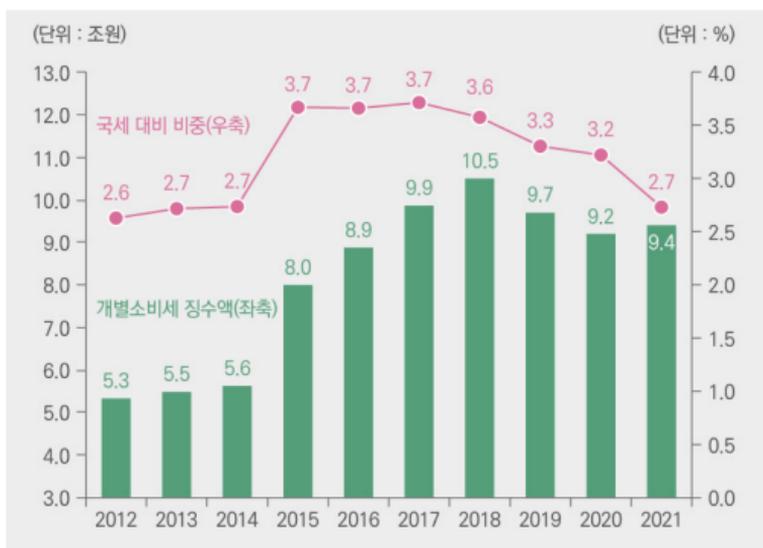
과세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전기, 오락용품 등 20%,</li> <li>• 보석·귀금속, 시계, 모피 등 20%,</li> <li>• 자동차 5%(2021.6.30.까지 3.5%)</li> <li>• 궤련 594원, 궤련형 전자담배 529원, 20개비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유 90원/ℓ (63원/ℓ), 중유 17원/ℓ</li> <li>• 발전용 유연탄 46원/kg(43원~49원/kg)</li> <li>• 천연가스 60원/kg (발전용 12원/kg) 등</li> </ul>
과세 장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행위: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회원제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주점 등 음식요금의 10%</li> <li>• 카지노는 매출액 500억원/1,000억원 기준 0/2/4%</li> </ul>

주 ( )는 탄력세율이 적용된 값임

##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탄·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조정 (유연탄 36원 → 46원/kg, 발전용 천연가스 60원 → 12원/kg)</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li> <li>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2년)</li> <li>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뿌리, 줄기)으로 만든 담배 과세</li> <li>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한도(100만원) 신설 (2021.6.30.까지)</li> <li>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 폐지</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액 공제 허용</li> <li>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2년)</li> <li>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23년) 및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20만원 → 30만원)</li> </ul>

## ● 개별소비세는 2021년 9.4조원, 국세 대비 2.7%



## 50 주세

-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하여 출고·수입 하는 자의 주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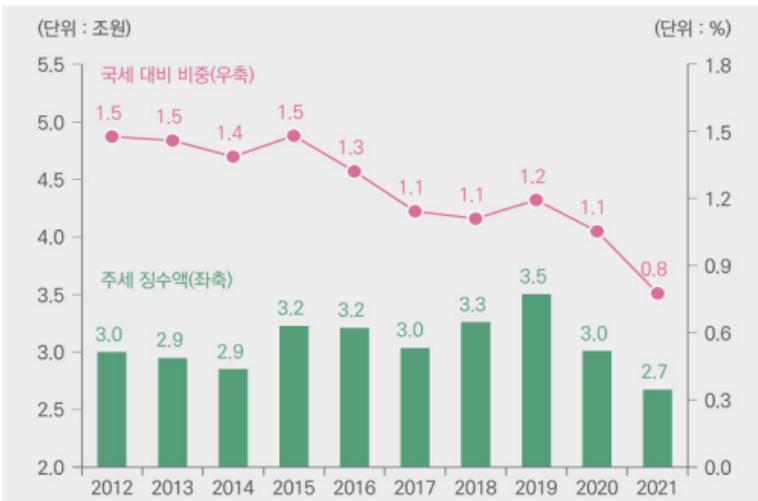
주종		세율
주정		57,000원/ kl (알코올 1%초과마다 600원 가산)
발효주	탁주	42,900원/kl <sup>1)</sup>
	맥주	855,200원/kl <sup>1)</sup>
	청주	30%
	양주	30%
	과실주	30%
증류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주: 1) '223.1~'233.31,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증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탁주: 5% → 41,700원/kl, 맥주: 72% → 830,300원/kl * 탁주와 맥주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맥주에 대한 세율경감 특례(맥주 세율의 80%) 적용기한 2년 연장(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li> </ul>

### ● 주세는 2021년 2.7조원, 국세 대비 0.8%



## 51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994년에 10년 한시 '교통세'로 신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해 2024년까지 연장

### ● 세율

- 기본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2021.11.12.~2022.4.30. (휘발유) 423원/ℓ (경유) 300원/ℓ  
2022.5.1.~2022.7.31. (휘발유) 370원/ℓ (경유) 263원/ℓ  
2022.8.1.~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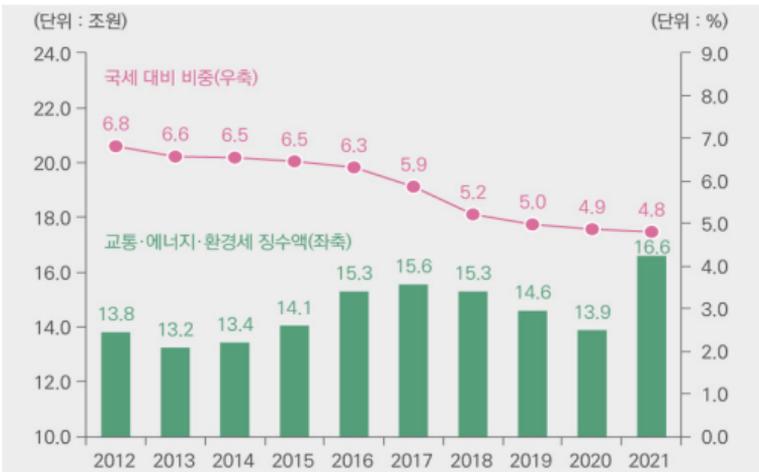
### ● 면세

-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외국군대 납품, 외교관 등

###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9	경유와 등유의 혼합유가 아닌 100% 등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더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2020	연안 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15% 감면 규정 신설(일몰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1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

###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1년 16.6조원, 국세 대비 4.8%



## 52 종합부동산세

-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비교하여 범위가 제한적
  - (건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만 과세대상인데 반해, 재산세는 주택 외에도 비주거용 건축물을 포함
  -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만 과세대상인데 반해, 재산세는 분리과세토지까지 포함

구 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세
건 축 물	주 거 용	• 주택 • 별장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과세	×
토 지	종합 합산	•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임야 등 •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 합산	• 건물 부속토지 • 인·허가 받은 사업용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 과세	• 농지·임야 등 • 공장용지, 공급목적 토지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 × ×

##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기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공제액 및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하여 결정

주택분 공시가격 합산액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합산액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합산액
× (1-재산세 세액감면율)	× (1-재산세 세액감면율)	× (1-재산세 세액감면율)
- 과세기준액 <sup>1)</sup>	- 과세기준액 <sup>1)</sup>	- 과세기준액 <sup>1)</sup>
× 공정시장가액비율 <sup>2)</sup>	× 공정시장가액비율 <sup>2)</sup>	× 공정시장가액비율 <sup>2)</sup>
<hr/>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누진세율 <sup>3)</sup>	× 누진세율 <sup>3)</sup>	× 누진세율 <sup>3)</sup>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hr/>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세부담 상한 초과액
<hr/>		
=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주: 1) (주택)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그 외 개인 6억원, 법인 미적용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2) 2022년 이후 100% 적용  
3) 다음 세율표 참조

- 서울: (주택) 1~2주택\* 개인 0.6~3.0%, 법인 3.0%  
3주택 이상 개인 1.2~6.0%, 법인 6.0%  
(종합합산토지) 1.0~3.0%, (별도합산토지) 0.5~0.7%
-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2주택 이상으로 구분

구분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초과누진공제
주택		3억원 이하	0.6/1.2%	-
		6억원 이하	0.8/1.6%	180/360만원
		12억원 이하	1.2/2.2%	420/840만원
		50억원 이하	1.6/3.6%	1,140/2,160만원
		94억원 이하	2.2/5.0%	7,220/15,840만원
		94억원 초과	3.0/6.0%	16,900/37,840만원
토지	종합 합산	과표	세율	초과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7,500만원
	별도 합산	과표	세율	초과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1억원
		400억원 초과	0.7%	2.2억원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2주택 이상

※ 법인주택분의 경우, 과표 구간 구분없이 3.0/6.0% 세율 적용

## ●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2020년 과세표준, 서울, 세 부담 상한비율 등 서울체계 전반에 걸쳐 제도 개편

- 주택분은 다주택자 및 법인을 중심으로 서울 등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액 인상, 세액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사항도 존재

구분		'18년 이전	'19~'20년	'21년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5~100% * 매년 5%p씩 상승하여 '22년 이후 100%	
과세기준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서울		0.5~2.0%	1~2주택 <sup>1)</sup> 0.5~2.7% 3주택 이상 0.6~3.2%	1~2주택 0.6~3.0% <sup>2)</sup> 3주택 이상 1.2~6.0%
세액 공제	고령자		10~30%	20~40%
	장기 보유	20~40%	20~50%	
세 부담 상한제		150%	1~2주택 150% 조정대상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1~2주택 <sup>1)</sup> 150% 3주택 이상 300%

주: 1)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2주택 이상

2) 법인주택분의 경우, 과표 구간 구분없이 3.0/6.0% 서울 적용

## ●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1조원, 국세 대비 1.8%



## 53 증권거래세

###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결제되거나 금융투자업자 및 양도자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 과세

-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함

### ● 세율

- 법정세율: 거래금액(비상장주식 등)의 0.43%
- 탄력세율: 유가증권 0.08%(농특세율 0.15%), 코스닥·K-OTC 0.23%, 코넥스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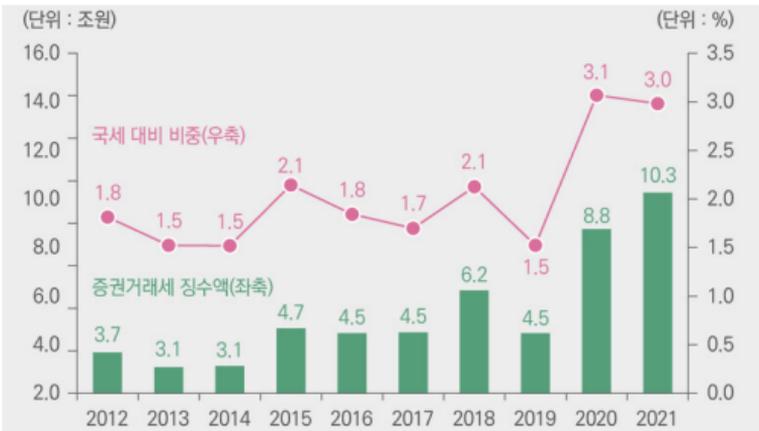
### ●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양도, 자본시장법(제119조)에 따른 주권매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등

###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9	• 탄력세율 인하(유가증권·코넥스: 0.15% → 0.1%, 코스닥·K-OTC: 0.3% → 0.25%)
2020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세율 인하(0.5% → 0.45%)
2021	• 탄력세율 인하(유가증권: 0.1% → 0.08%, 코스닥·K-OTC: 0.25% → 0.23%)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세율 인하(0.45% → 0.43%)

### ● 증권거래세는 2021년 10.3조원, 국세 대비 3.0%



## 54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시,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해 부과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2. 금융·보험 기관과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등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4.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 휴양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10억원 초과: 35만원
6.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 신용카드회원/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
7.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 초과분)	1만원: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00원
9. 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	100원

- 인지세는 2021년 0.96조원, 국세 대비 0.28%



## 55 교육세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소요자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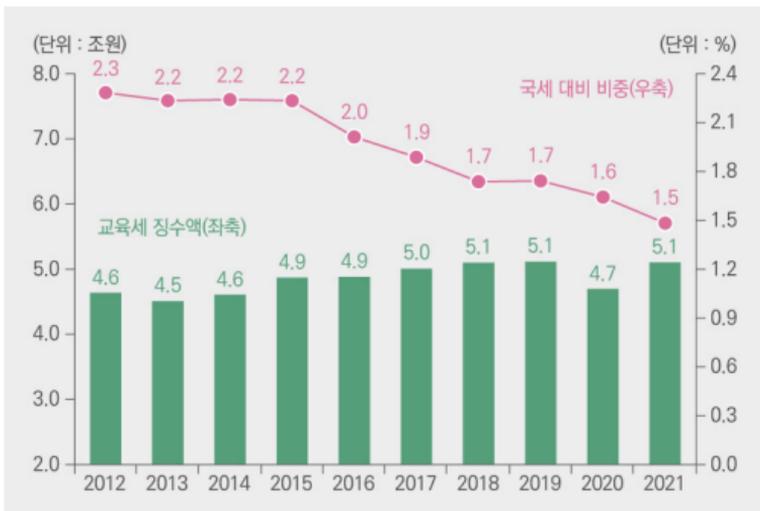
### ● 세율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 개별소비세액의 30% (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은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이상인 주류 또는 맥주의 경우 30%)

### ● 비과세

-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 ● 교육세는 2021년 5.1조원, 국세 대비 1.5%



## 56 농어촌특별세

### ● URE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세로서 1994년 7월 도입, 2024년 6월까지 30년간 적용

- 조세감면액, 취득세액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과세표준	세율	부과 대상
조세감면액	20%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면액
	10%	세금우대종합저축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1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30%	골프장 입장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
취득세액 * 표준세율 2% 적용	10%	부동산 등 취득자 *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 ● 농어촌특별세는 2021년 8.9조원, 국세 대비 2.6%



## 57 관세

### ● 관세는 수출·입에 따라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

-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 또는 ‘수량’  
 ※ 당해물품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등에 기초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를 통해 결정
- 관세율: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국정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등),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WTO양허세율, FTA협정세율 등)\*  
 ※ 단 관세법상의 적용순위에 따름

### ● 관세율: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성

- 국정관세율: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
- ① 기본관세율: 2021년 현재 전체품목 단순평균으로 8.8% 부과
- ② 잠정관세율: 기본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시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로, 2021년 현재 적용 품목 없음
- ③ 탄력관세율: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율

탄력세율 세부관세	내용
덤핑방지 관세	• 외국이 수출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 관세	• 외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
보복 관세	• 자국의 수출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는 차별관세
긴급 관세	• 자국의 주요 산업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 시 부과하는 관세
특정국 물품긴급 관세	•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관세

탄력세율 세부관세	내용
특별 긴급 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
조정 관세	•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자국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할당 관세	• 원활한 상품의 수급을 위해 특정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계절 관세	•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 국내시장이 교란 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편익 관세	•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④ 일반특혜관세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 시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율

- 협정관세율: 우리나라의 통상 증진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관세율
  - 협정 주체별: 양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협정종류별: '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 협정 개도국 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 (GSTP) 양허관세율'과 '특정국가와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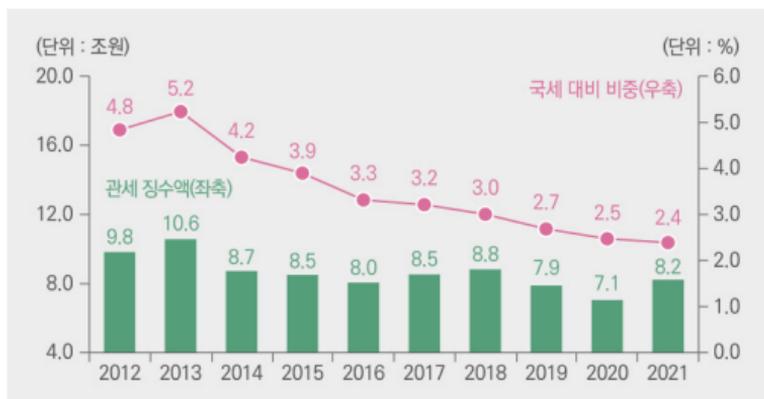
● **관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지역법 및 FTA 등 협정에 근거**

- 외교관 물품, 정부 용품, 재수출·재수입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면세
- 외국인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등 감면

##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현황

대상국가	발효일	대상국가	발효일
칠레	2004.4.1.	호주	2014.12.12.
싱가포르	2006.3.2.	캐나다	2015.1.1.
유럽자유무역연합	2006.9.1.	중국	2015.12.20.
ASEAN	2007.6.1.	뉴질랜드	
인도	2010.1.1.	베트남	
EU	2011.7.1.(잠정) 2015.12.13.(전체)	콜롬비아	2016.7.15.
페루	2011.8.1.	영국	2020.1.1.
		중남아메리카	2021.3.1.
미국	2012.3.15.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2022.2.1.
터키	2013.5.1.		

## ● 관세 수입 실적은 2021년 8.2조원, 국세 대비 2.4%



Tax Statistic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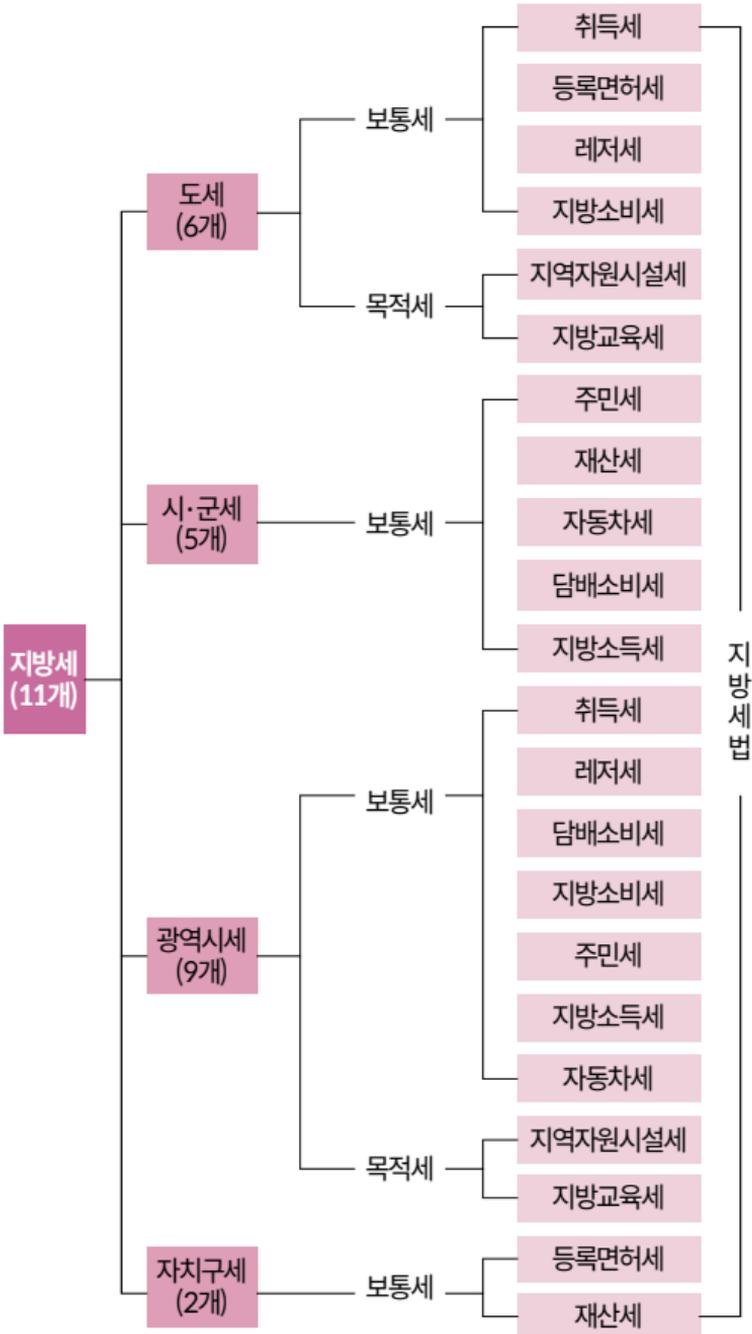
# Part 3

지방세



## 58 지방세 체계

### ● 지방세체계: 다세목 1세법



## 59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세율: 2.8%, 3.5%, 4.0% 등</li> <li>유상취득(주택): 1.0~3.0%, 8.0%, 12.0% 등</li> <li>중과세율: 4.4%, 8.0%, 8.4% 등</li> </ul>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4.2%
	양도소득		0.6~7.0%
	법인소득		1.0~2.5%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0.1~0.4%</li> <li>건축물: 0.25~4%</li> <li>토지 종합: 0.2~0.5%</li> <li>별도: 0.2~0.4%, 분라: 0.07~4%</li> <li>선박: 0.3~5%</li> <li>항공기: 0.3%</li> </ul>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1%
자동차세	소유분	자동차	승용차: 1cc당 18~200원 (승합자동차 등은 다름)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종류별 다름)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주: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 순 징수액이 큰 순서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록 면허세	등록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0%), 설정(0.2%), 기타(10,000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0.4%) 자본증가(0.4%) • 비영리법인: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가족 인허가 등 면허	18,000~67,500원	
주민세	개인분	개인	개인(1만원 이하)
	사업소분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소 연면적	기본: 개인 5만원 법인 5~20만원 사업소: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1억 3,500만원 초과)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방 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각각 20%, 20%, 40%, 10~25%, 20%, 30%, 43.99%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 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200원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

## 60 지방세 수입

### ● 2020년 기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59.0%를 차지

- 국제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과 함께 지방소비세수 규모가 증가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b>합계</b>	53.8 [-0.3]	61.7 [14.8]	71.0 [15.0]	75.5 [6.3]
<b>취득세</b>	13.3	16.4	20.8	21.7
<b>지방소득세</b>	10.3	9.7	12.8	13.1
<b>재산세</b>	8.3	8.8	9.3	9.9
<b>자동차세</b>	6.7	6.9	7.1	7.6
<b>지방소비세</b>	3.1	5.8	6.0	6.4
<b>지방교육세</b>	5.0	5.5	5.8	6.3
<b>담배소비세</b>	2.8	3.0	3.0	3.7
<b>주민세</b>	0.3	1.4	1.5	1.8
<b>등록면허세</b>	1.3	1.5	1.8	1.7
<b>지역자원시설세</b>	0.9	1.1	1.4	1.4
<b>레저세</b>	1.0	1.1	1.1	1.1
<b>기타</b>	0.6	0.6	0.4	0.8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통계연감」, 2021.10.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b>합계</b>	80.4 [6.5]	84.3 [4.9]	90.5 [7.3]	102.0 [12.8]	(100.0)
<b>취득세</b>	23.5	23.8	23.9	29.5	(28.9)
<b>지방소득세</b>	14.4	16.7	17.4	16.9	(16.6)
<b>재산세</b>	10.7	11.5	12.7	13.8	(13.5)
<b>자동차세</b>	7.8	7.9	7.7	8.1	(8.0)
<b>지방소비세</b>	7.3	7.5	11.3	16.6	(16.2)
<b>지방교육세</b>	6.4	6.5	6.7	7.1	(7.0)
<b>담배소비세</b>	3.6	3.5	3.4	3.6	(3.5)
<b>주민세</b>	1.9	2.0	2.1	2.1	(2.1)
<b>등록면허세</b>	1.6	1.7	1.8	2.1	(2.0)
<b>지역자원시설세</b>	1.5	1.6	1.7	1.8	(1.7)
<b>레저세</b>	1.1	1.0	1.0	0.2	(0.2)
<b>기타</b>	0.6	0.5	0.7	0.3	(0.3)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통계연감」, 2021.10.

Tax Statistics 2022

# Part 3

지방세  
지방세목



## 61 취득세

###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 취득에 대해 과세

구분	설명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 -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등 - 건축물: 「건축법」의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구조물에 설치한 각종 시설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등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 기계장비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등
선박	기선, 범선 등 모든 배
임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탐사권 및 채굴권
어업권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권리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권리
골프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회원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트회원권	회원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회원권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2023년부터 유상·원시 취득시 실제 거래가액,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서울

- 표준세율: 취득원인 및 대상에 따라 1~4%

(단위: %)

구분		세율
부동산	주택 유상매매	취득가액별 1.0~3.0 <sup>1)</sup>
	주택외 유상매매	4.0
	원시,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영리사업자 3.5, 비영리사업자 2.8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부동산 외	선박	규모 및 취득원인별 2.0~3.0
	차량	용도 및 규모별 2.0~7.0
	기계장비	2.0~3.0
	항공기	2.0~2.02
	기타(입목, 광업권 등)	2.0

주: 1)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

- 중과세율: 1)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시

(단위: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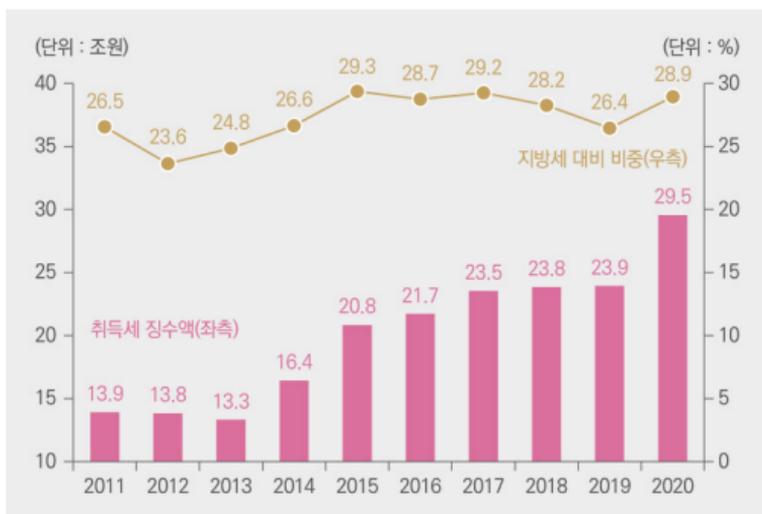
## 2)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시(산업단지, 공업·유치지역 제외)

대상	세율
①법인 본점, 주사무소 및 공장 신설, 증설 등	표준세율+4%p
②법인설립, 지점, 분소, 공장 설치 등	(표준세율×3)-4%p
③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8%p
①, ② 동시 적용	표준세율×3
②, ③ 동시 적용	(표준세율×3)+4%p

• 특례세율: 형식적인 취득이나 간주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

대상	세율
<b>형식적인 취득</b> - 부동산의 환매등기 병행매매 후 환매권 행사, 상속, 법인 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 재산분할 등	표준세율-2%p
<b>간주취득 등</b> - 건물 개·보수 등 간주취득, 임차수입한 선박 등 연부취득, 대여업자의 건설기계·차량 등 취득 등	2%

## ● 취득세는 2020년 29.5조원, 지방세 대비 26.4%



## 62 지방소득세

### ●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

### ● 과세표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규정 준용

### ● 세율: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7만 2천원+1,200만원 초과분 1.5%
	4,600만원~8,800만원	58만 2천원+4,600만원 초과분 2.4%
	8,800만원~1.5억원	159만원+8,800만원 초과분 3.5%
	1.5억원~3억원	376만원+1억5,000만원 초과분 3.8%
	3억원~5억원	946만원+3억원 초과분 4.0%
	5억원 초과	1,746만원+5억 초과분 4.2%
	10억원 초과	3,846만원+10억 4.5%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	세율 50% 범위 내 가감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	2억원 이하	1%
	2억원~200억원	200만원+2억원 초과분 2%
	200억원~3천억원	3억 9,800만원+ 200억원 초과분 2.2%
	3천억원 초과	65억 5,800만원+ 3,000억원 초과분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	과세표준 × 2% 추가납부 (미등기 4%)
	비사업용 토지양도	과세표준 × 1% 추가납부 (미등기 4%)
미환류소득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과세표준×10% 추가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 지방소득세는 2020년 16.9조원, 지방세 대비 16.6%



## 63 재산세

###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해 과세

#### ●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90%(시행령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80%(시행령 60%)

#### ● 세율

- 주택
  - ① 별장: 과세표준액의 4%
  - ② 기타주택

과세표준	기본세율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억 4천만원 이하	57만원 +0.4%	42만원 +초과금액의 0.35%
5억 4천만원 초과		-

※ 단, 1세대1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 9억원(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인 경우  
각 과세표준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 적용('23년까지 적용)

#### ③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4%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초과금액의 0.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초과금액의 0.4%

③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이외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 선박: 고급 5%, 기타 선박 0.3%
- 항공기: 0.3%

● 재산세는 2020년 13.8조원, 지방세 대비 13.5%



## 64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 등 부담금적 성격을 가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 세율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용도별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 승용·승합·화물·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율 차등화
-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	-
2,500cc초과	24원	-	-

-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기타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전기자동차	20,000원	100,000원

● 자동차세는 2020년 8.1조원, 지방세 대비 8.0%



## 65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지방세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거래에 부과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이양비율: 2022년 기준 과세표준의 23.7%
  - 2010년 5%로 도입 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11%, 2021년에는 21%까지 인상
  - 2022년 23.7%, 2023년부터는 25.3%로 인상

- 2.7%p분: 전환사업 보전 등 기타 안분
- 5%p분: 지역별 소비지출 반영
- 6%p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역별 취득세 등의 감소 반영
- 10%p분: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인상분 (~2026.12.31.) 및 지역별 소비 반영

※ 수도권으로 인분된 지방소비세액의 35%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재분배

- 지방소비세는 2020년 16.6조원, 지방세 대비 16.2%



- 4)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8월 28일 이후의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으며, 2019년에는 구간별 세율을 다소 조정

## 66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

● 과세표준: 개수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고형물 1그램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최근 주요 개정 사항

2020 •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뿌리, 줄기)으로 만든 담배 과세

● 담배소비세는 2020년 3.6조원, 지방세 대비 3.5%



## 67 지방교육세

### ●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조달을 위한 목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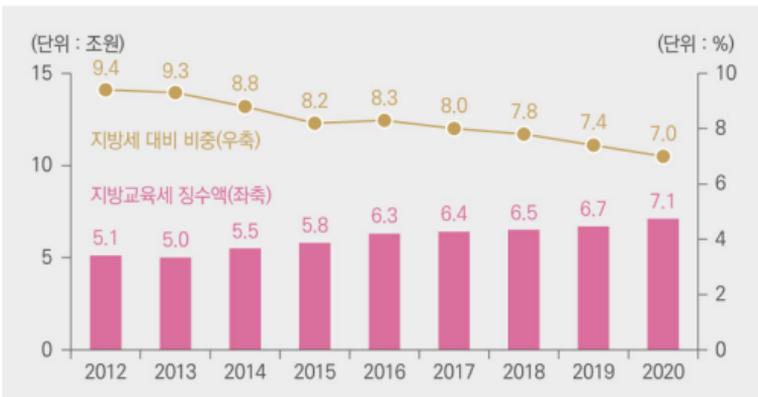
#### ● 납세의무자: 다음의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

- 취득세(자동차 취득세 제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록면허세 제외)
- 레저세
- 재산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 서울

-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서울로 산출한 금액)의 20%
-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도시 25%)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 지방교육세는 2020년 7.1조원, 지방세 대비 7.0%



## 68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 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과세로 구성(2011년 등기·등록과 면허세를 통합)

### ● 세율

구분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상 2%, 무상 1.5%, 상속 0.8% 소유권 보존: 0.8% 경매신청,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 0.2%
차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 경차 2% 그 외 차량 2~3% 저당권 설정·이전 0.2%, 그 외 건당 1.5만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0.2%, 기타 1만원
법인등기	설립·증자 0.4%, 비영리의 경우 0.2% 본점이전 112,500원, 지점설치 40,200원
기타권리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권의 담보설정 0.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이전 1.8만원(상속 1.2만원)
면허분 (제1종~제5종)	인구 50만 이상 시 등: 18,000~67,500원 그밖의 시: 7,500~45,000원 군: 4,500~27,000원

### ● 등록면허세는 2020년 2.1조원, 지방세 대비 2.0%



## 69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개인분, 자본금 및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업원분으로 구성(2021년부터 체계 개편)

### ● 서울

구분	내용
개인분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
사업소분	①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만원 • 법인: 자본규모에 따라 5~20만원 ② 연면적 기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 주민세는 2020년 2.1조원, 지방세 대비 2.1%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이관('14),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개인 균등분 1만원선 인상) 등으로 세수 증가



## 70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소방 등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등 필요경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2011년)

###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세제곱미터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화재위험 건축물 : - 저유장, 주유소 등 10층 이하 건축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대형마트, 호텔 등 11층 이상 건축물 산출세액의 100분의 3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

● 지역자원시설세는 2020년 1.8조원, 지방세 대비 1.7%



## 71 레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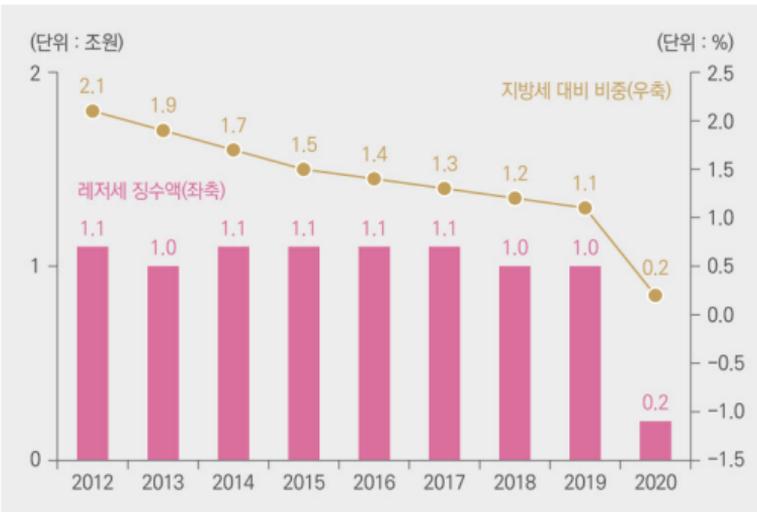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영위 사업자의 발매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성격의 지방세

### ● 과세대상: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경기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 서울: 발매금 총액의 10%

### ● 레저세는 2020년 0.2조원, 지방세 대비 0.2%



Tax Statistics 2022

# Part 4

## 조세지출



## 72 국세 조세지출 현황

### ● 국세감면액 2021년 55.9조원\*, 2022년 59.5조원\* 전망

\* 2021년 및 2022년 국세감면액 잠정치

### ● 국세감면율은 2021년 13.3%\*에서 2022년 13.9%\*\*로 상승 전망

\* 2021년 국세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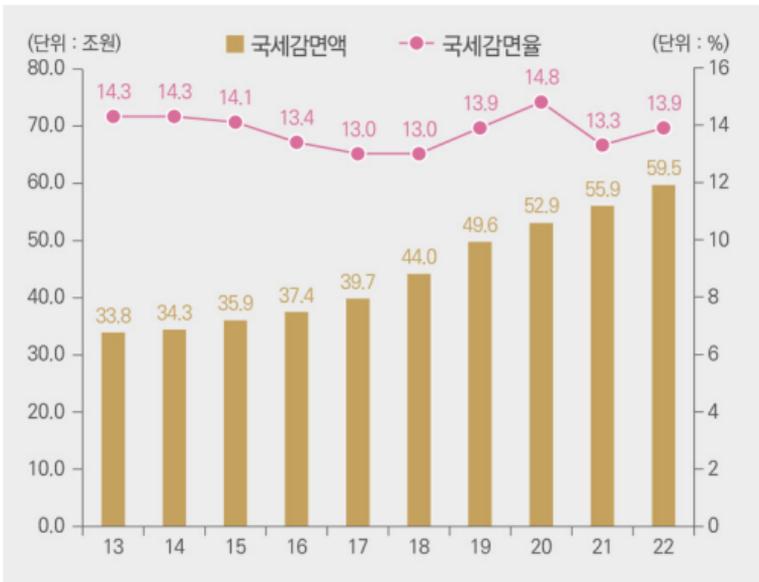
\*\* 2022년 본예산을 반영하여 재계산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 × 100

- 2020년 이후 국세수입액에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포함(「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 ● 최근 10년 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추이

•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8조원에서 2022년 59.5조원으로 상승



주 1 국세감면액은 2020년까지는 실적치, 2021년 이후는 전망치

2 2021년 국세감면율은 2021년 국세수입 실적치를 반영하여 재계산

3 2022년 국세감면율은 2022년 본예산을 반영하여 재계산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73 국세 세목별 조세지출

### ● 세목별 국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서임(2022년 전망 기준)

- 세목별 평균 감면율\*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임

\* { 세목별 감면액 / (세목별 조세수입액 + 세목별 감면액)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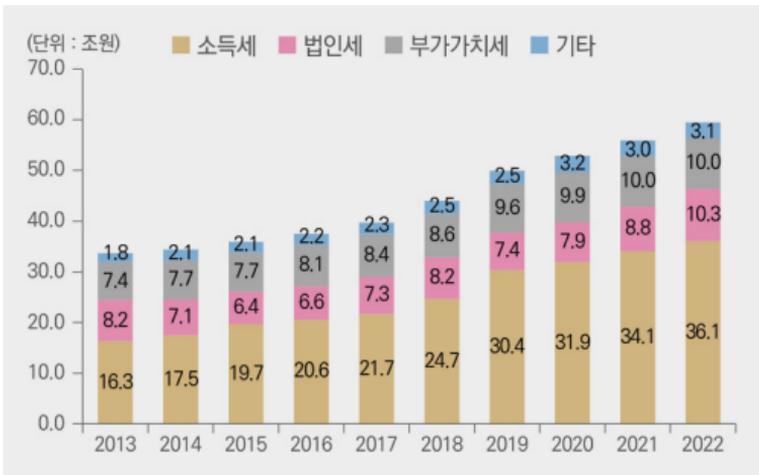
- 부가가치세 수입액에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포함

- 2022년 국세감면액은 전망치, 국세수입액은 2022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합계
조세수입액 (A)	105.8	74.9	101.5	85.2	367.5
조세감면액 (B)	36.1	10.3	10.0	3.1	59.5
조세감면 비중 [=B/A]	34.1	13.7	9.8	3.7	16.2
평균 감면율 [=B/(A+B)]	25.5	12.1	9.8	3.5	13.9

### ● 최근 10년 간 국세감면액 추이



## ● 세목별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2021년(잠정), 1천억원 초과 기준

### 소득세: 32개 항목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8조원)
2. 근로장려금 (4.6조원)
3. 연금보험료공제 (3.5조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2조원)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2.0조원)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7조원)
7. 연금계좌세액공제 (1.2조원)
8.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조원)
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1조원)
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조원)
1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0.9조원)
12. 자녀세액공제 (0.9조원)
1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0.8조원)
14. 자녀장려금 (0.6조원)
15.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0.6조원)
1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6조원)
17.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0.5조원)
18.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0.4조원)
19. 장애인 추가공제 (0.4조원)
20.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0.4조원)
2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0.3조원)
2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0.3조원)
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3조원)
2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2조원)
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2조원)
26.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0.2조원)
27.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0.1조원)
28. 기장세액공제 (0.1조원)
2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0.1조원)

- 30. 연금계좌 세액공제(50세 이상) (0.1조원)
- 3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1조원)
- 32. 중소기업창업출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0.1조원)

#### 법인세: 9개 항목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조원)
- 2. 통합투자세액공제 (1.3조원)
-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조원)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조원)
- 5.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0.8조원)
- 6.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0.4조원)
- 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3조원)
-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3조원)
-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2조원)

#### 부가가치세: 10개 항목

- 1.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7조원)
-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5조원)
- 3.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조원)
- 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1조원)
- 5.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2조원)
- 6.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0.2조원)
-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0.2조원)
- 8.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0.2조원)
- 9.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0.1조원)
- 10.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1조원)

## 74 예산분류별 국세 조세지출

● 예산분류 기준으로 2021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높음

- 동 4개 분야의 조세지출금액 합계액이 47.8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금액 55.9조원 대비 85.5% 차지

(단위: 조원, %)

예산분류	감면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4.1	7.2
공공질서 및 안전	-	-
외교·통일	0.001	0.0
국방	0.03	0.1
교육	1.1	2.0
문화 및 관광	0.02	0.0
환경	1.4	2.4
사회복지	19.8	35.5
보건	7.8	14.0
농림수산	5.8	10.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3	25.6
교통 및 물류	0.5	0.8
통신	-	-
국토 및 지역개발	1.1	2.0
과학기술	0.003	0.0
예비비	-	-
합계	55.9	1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1

## ● 4대 주요 조세지출 분야의 조세지출 항목 사례

2021년(잠정), 1조원 초과 기준

<p>사회복지 (19.8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장려금(4조 6,216억원)</li> <li>•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 4,989억원)</li> <li>•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조 8,089억원)</li> <li>• 연금계좌세액공제(1조 1,860억원)</li> <li>•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1조 962억원) 등</li> </ul>
<p>보건 (7.8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 7,747억원)</li> <li>•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1조 9,521억원)</li> <li>• 의료비 특별세액공제(1조 1,137억원) 등</li> </ul>
<p>농림수산 (5.8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 6,570억원)</li> <li>•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5,732억원)</li> <li>•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 2,475억원) 등</li> </ul>
<p>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4.3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6,747억원)</li> <li>•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7,302억원)</li> <li>•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조 4,848억원)</li> <li>•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9,517억원)</li> <li>• 통합투자세액공제(1조 3,354억원) 등</li> </ul>

주: ( )의 감면금액은 2021년 잠정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1.

## 75 국세 조세특례평가제도

-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2012년 성과관리 도입 후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시행, 평가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토록 함
  - 소관부처의 조세지출 자율평가 결과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
  -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시행, 매해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대상, 신규 도입에 대한 '사전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로 구성

### ● 2021년 조세특례평가: 예비타당성평가 1건 심층평가 18건 결과

(단위: 억원)

신규 조세특례 도입안 평가(1건)		
항 목	평가결과 요약	
1.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기획재정부 건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과 과세혜택 부여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일몰도래 조세특례 평가(18건)		
항 목	규모	평가결과 요약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27,340	대상기술 선정과정 체계화, 대상기술 비대화 방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완화를 전제로 조건부 연장
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2,094	제도의 1회 일몰 연장을 시행하되, 종합적인 에너지정책 개편 틀에서 중장기적인 논의 필요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2	타당성·효과성·형평성 측면에서 성숙한 제도로서 일몰 연장 건의하되, 향후 여타 고용지원 제도들과 통합할 고려

일몰도래 조세특례 평가(18건)

항 목	규모	평가결과 요약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7,79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증대에는 긍정적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부족. 기 취업자, 고소득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 필요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441	특례의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 지원이 요구되어 일몰연장 바람직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77	‘고용증대세제’와 통합하여 고용 지원세제를 단순화하고 지역별·기업 규모별 차등지원하며 사후관리규정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
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97	제도를 유지하되, 감면대상을 축소(재건축·비사업용 토지 제외)하고 단일감면율 체계를 유인구조에 맞게 조정(협약취득·기타취득 차등화 등) 필요
8.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120	재정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22	효과가 한정적이고 택시산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택시사업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몰 연장 필요
1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중고차 제외)	9,891	단기적으로 제도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자원 순환정책에 부합되도록 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
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975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어 일몰연장 건의

일몰도래 조세특례 평가(18건)

항 목	규모	평가결과 요약
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719	과세특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규모의 축소 필요
1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501	경형자동차 수요증대에 기여하며 환경 개선 효과가 있고, 형평성개선 효과도 있어 일몰연장
14.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516	택시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여건을 개선하고 영업이익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인정되어 일몰연장 필요
15.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8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률은 지원규모 축소가 바람직 명칭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일몰고려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은 폐지
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39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허용이 타당하나, 성실사업자 판단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등 공제가 성실신고 유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임
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551	조세지원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조세특례를 연장할 필요
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5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타당 적절하나 제도설계상 허점 보완 필요

주: 감면액은 2020년 실적치 기준

\* 농협·수협중앙회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및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특례 내용이 유사하므로 1건으로 일괄평가

자료: 정부, 「2021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결과」, 2021.

## 76 2022년 국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 총 74개 항목, 2022년 전망치 기준 11.7조원 규모

(단위: 억원)

순서	제도명	감면액 ('22 전망)
<b>(적극적 관리대상: 69개 항목, 8.6조원)</b>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956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3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세액공제	229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45
5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60
6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58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0
8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0
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추정곤란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154
1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6
1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5
14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0
15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0
16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42
1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3
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8
19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1

순서	제도명	감면액 ('22 전망)
20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
2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15
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등	4,589
2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79
24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
25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558
2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693
27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423
28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
29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4
30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0
3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74
32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0.1
3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
3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84
3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5
3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154
3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4,601
38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0.2
3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51
4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765

순서	제도명	감면액 (’22 전망)
4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0
42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0
43	공공매입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0
4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
4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4
46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
4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0
4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7
49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50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160
51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53
52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41
5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5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55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54
5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0.6
5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6
58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503
59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660
60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62
6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22
62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421

순서	제도명	감면액 ('22 전망)
6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9
64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430
65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4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2,017
67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482
6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7
6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874
<b>(집계적 관리대상: 5개 항목 3.0조원)</b>		
1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1,506
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834
3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4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5
5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2,109

## 77 국세 조세지출 관리규정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의 법정한도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국세감면액)} × 100

###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법인세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①)  
: 과세표준 100억원이하/100~1,000억원/1,000억원 초과  
10%/12%/17%  
\* 단 중소기업 7%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②)  
: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초과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액은 산출세액의  
35%/45%

### 조세특례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투자자산 세액공제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②)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등  
9개 투자세액공제
- 감면제도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④)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중소기업 감면(제63조) 등 감면제도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30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제130조)

## 78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

### ● 지방세 감면액은 2020년 14.9조원 감면율은 12.8%

- 지방세 감면액은 2016년 이후 증가세이나 감면율은 2016년 이후 하락세
- 지방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지방세법」 제28조의2)

\* '17년: 15% '18년: 15%+0.5% '19년: 15.25%+0.5%  
'20년 이후: 직전 3년간 지방세 감면을 평균+0.5%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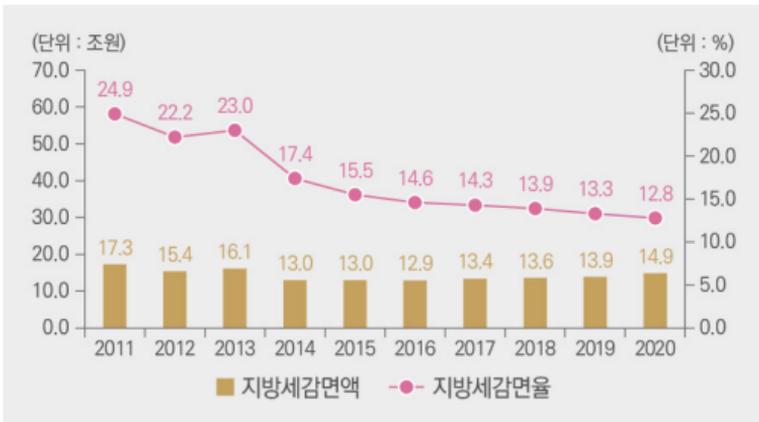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징수액	75.5	80.4	84.3	90.5	102.0
감면액	12.9	13.4	13.6	13.9	14.9
감면율	14.6	14.3	13.9	13.3	12.8

주: 감면율=비과세·감면액/(징수액+비과세·감면액)×100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통계연감」, 2021.

### ● 최근 10년 간 지방세감면액 및 지방세감면율 추이

- 지방세감면율은 2011년 24.9%에서 2020년 12.8%로 하락



## 79 지방세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30,123 (100.0)	128,798 (100.0)	134,109 (100.0)	136,212 (100.0)	139,070 (100.0)	149,251 (100.0)
재산세	48,417 (37.2)	51,689 (40.1)	54,222 (40.4)	56,917 (41.8)	61,516 (44.2)	64,737 (43.4)
취득세	53,054 (40.8)	48,667 (37.8)	50,273 (37.5)	50,844 (37.3)	51,291 (36.9)	54,877 (36.8)
담배 소비세	16,642 (12.8)	18,801 (14.6)	19,662 (14.7)	19,765 (14.5)	17,419 (12.5)	20,779 (13.9)
자동차세	5,260 (4.0)	4,874 (3.8)	4,961 (3.7)	4,900 (3.6)	4,980 (3.6)	4,808 (3.2)
주민세	1,862 (1.4)	1,894 (1.5)	1,832 (1.4)	1,764 (1.3)	1,906 (1.4)	2,127 (1.4)
지역자원 시설세	1,235 (0.9)	1,278 (1.0)	1,336 (1.0)	1,401 (1.0)	1,250 (0.9)	1,290 (0.9)
등록 면허세	3,524 (2.7)	1,422 (1.1)	1,679 (1.3)	500 (0.4)	571 (0.4)	612 (0.4)
레저세	121 (0.1)	168 (0.1)	142 (0.1)	118 (0.1)	135 (0.1)	19 (0.0)
지방 소득세	7 (0.0)	4 (0.0)	3 (0.0)	2 (0.0)	1 (0.0)	1 (0.0)
지방 교육세	2 (0.0)	1 (0.0)	1 (0.0)	0.5 (0.0)	1 (0.0)	1 (0.0)

주: ( )는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통계연감」, 2021.

## 80 주요 지방세 조세지출 항목

### ● 최근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기준

(단위: 억원, %)

항목	감면액 ('20년)
1. 매매용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68)	10,527
2.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31)	8,252
3. 학교·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41)	5,096
4.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50)	3,743
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78)	3,475
6.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74)	2,979
7.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57의2)	2,525
8.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66)	2,059
9.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7)	1,811
10.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85의2)	1,136
합계	41,604 (27.9)

주: ( )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 대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통계연감」, 2021

## 81 2022년 지방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 총 96개 항목, 2020년 실적 기준 1.3조원 규모

(단위: 억원)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b>I. 농어업을 위한 지원: 15개 항목, 878억원</b>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 취득 개간농지	1.1
2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내 교환분합 농지(경지정리사업)	0.3
3	임업진흥법 등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하는 보전산지	11.9
4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39.2
5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0.1
6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	252
7	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사업·농지 재개발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116.1
8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토지 및 시설물	25.4
9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하는 농지	80.5
10	농어촌공사가 농지 구입임차 등 FTA 피해 농어업인 경영규모 확대 지원 목적 취득 농지	3.8
11	농어촌공사가 제3자공급 목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12	농어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간척 포함) 및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농지	30.2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13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고유업무 부동산	10.3
14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307.2
15	지방농수산물공사 법인등기	-
<b>II.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0개 항목, 860억원</b>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
17	사회복지법인등(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한센복지협회) 고유업무 부동산(의료 외)	290
18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1
19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1
20	근로복지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0.3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
22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0.1
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
24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567
25	대한적십자사 고유업무(의료외사업) 부동산	1.2
<b>III.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7개 항목, 118억원</b>		
2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중견기업)	34.5
27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대기업, 과밀억제권역외)	30.8
28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중소기업)	52.4
29	한국환경공단(환경복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0.5
30	한국환경공단(재활용시설, 환경영향평가, 석면안전관리)	0.2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31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사업 부동산	-
32	해양환경관리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 선박	0.1
<b>IV.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개 항목, 9억원</b>		
33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8.7
34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
<b>V.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10개 항목, 1,120억원</b>		
35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 부동산	3.8
36	벤처기업 고유업무 부동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15.8
37	지식산업센터용 분양임대 부동산(사업시행자)	509
38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입주기업, 중소기업한정)	588
3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	-
40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0.3
41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1.3
42	중소기업협동조합 고유업무 부동산 전통시장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0.3
43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용 신축 건축물	-
44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 부동산	1.2
<b>VI.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3개 항목, 1,805억원</b>		
45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용 부동산	0.1
46	한국철도시설공단 취득 철도차량	0.1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47	한국철도시설공단 취득 국가귀속 부동산	71.6
48	한국철도공사(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66.6
49	한국철도공사(철도차량)	
50	도시철도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304.7
51	하이브리드 자동차	1,326
52	교통안전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1.4
53	물류단지개발사업용 부동산(시행자)	19.4
54	물류단지내 물류사업용 부동산(물류업자)	9.6
5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2.3
56	별정우체국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0.2
57	별정우체국 공용 또는 공공용 부동산	2.7
<b>VII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자원: 27개 항목, 7,256억원</b>		
58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시행전 부동산소유자)	1,738
59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사업시행자)	1,169
6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시행자 사업용)	0.4
61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시행자 대지조성용)	71.1
62	도정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시행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63	도정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0.3
64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취득 부동산 (입주기업 창업 및 사업장 신설)	8.1
65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취득 부동산 (사업시행자 사업용)	14.5
66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취득 부동산 (입주기업 창업 및 사업장신설)	-
67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취득 부동산 (사업시행자 사업용)	1.7
6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용으로 제3자에게 공급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물·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	704
69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국가 등 무상귀속 예정 공공시설물 등)	25.4
70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단지 조성용)	363.1
71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시행자 분양·임대용 산업용 건축물)	24.2
72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시행자 조성공사 끝난 토지 분양전 보유 단계)	20.3
73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시행자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 건축물)	64.3
74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시행자 직접사용 목적토지)	17.9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75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건축물 신축증축)	2,974
76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건축물 대수선)	
77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유사업 부동산	11.1
78	외국인투자기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	21.3
79	외국인투자기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사업개시일전)	4.2
80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등의 외국인 투자	-
81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등의 외국인 투자	-
82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거주목적 취득 주택(1가구 1주택)	23
83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 취득 주택(1가구 1주택)	
8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취득 주택(1가구 1주택)	
<b>VIII.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1개 항목, 1,277억원</b>		
8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사업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1.6
86	지방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982.1
87	지방공기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용 부동산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예정 공공시설 물·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	96.1
88	지방공단 고유업무 부동산	6.6

	감면대상	감면액 ('20 실적)
89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고유업무 부동산	42.3
90	새마을운동조직 고유업무 부동산	6.8
91	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 부동산	5
92	정당 고유업무 부동산	6.9
93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24.1
94	마을회 등 소유 부동산, 임야	105.2
95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과세 특례	-
<b>IX.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1개 항목, 0억원</b>		
9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지방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
  - : ('17년까지) 15.0% 목표
  - ('18년) '17년 감면율 + 0.5%
  - ('19년) '17~'18년 평균감면율 + 0.5%
  - ('20년 이후)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 + 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조문 등에서 100% 감면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85%의 감면율을 적용 (최소납부세제, '15년 도입)

※ 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 등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지방세 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매년 2월말일)
-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 제출(매년 3월 31일)
- 총 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방세 특례 도입에 대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

## 부록: 조세용어 해설1)

7

<b>가산세</b>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b>가업상속공제</b>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b>가처분소득</b>	개인이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b>각사업연도소득금액</b>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과세소득금액(익금-손금)
<b>간이과세제도</b>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b>간이세액표</b>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b>간접세</b>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표적인 세목 부가가치세
<b>간접외국납부세액</b>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을 하여 과세된 세액
<b>간주</b>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간주하다', '의제하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
<b>간주공급</b>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b>간주임대료</b>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
<b>간편장부신고자</b>	중·소규모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간편장부라 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
<b>감가상각비</b>	토지를 제외한 유형·무형의 고정자산이 사용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되는 금액

1) 조세용어해설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세무용어사전」 및 기타 문헌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b>감면</b>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과세해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면제해주는 것
<b>개별소비세</b>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b>거래과세</b>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
<b>거래징수</b>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b>거주자</b>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b>결산조정</b>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익금·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b>결손금</b>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
<b>결손금의 소급공제</b>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b>결손금의 이월공제</b>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20년 이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b>결손처분</b>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
<b>결정</b>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
<b>결정세액</b>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b>경정</b>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b>경정청구권</b>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b>고용증대세제</b>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해 주는 세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허용

<b>고유목적사업준비금</b>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b>고정사업장</b>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음
<b>공급가액</b>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가치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b>공급대가</b>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
<b>공매</b>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
<b>공시지가</b>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b>과밀억제권역</b>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b>과세가격</b>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
<b>과세거래</b>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b>과세권</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
<b>과세기간</b>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함.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연도'라고 규정
<b>과세기준일</b>	해당 재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기준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b>과세단위</b>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
<b>과세대상</b>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음
<b>과세물건</b>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b>과세소득</b>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
<b>과세소득 열거주의</b>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b>과세소득 포괄주의</b>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
<b>과세요건</b>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즉 과세물건이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것
<b>과세이연</b>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b>과세전적부심사</b>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물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b>과세처분</b>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
<b>과세표준</b>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b>과소자본세제</b>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b>과점주주</b>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함
<b>관세</b>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b>교육세</b>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b>교통·에너지·환경세</b>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신설하여 10년간(1994~2003)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과세 시한을 2024년까지 연장
<b>국내원천소득</b>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b>국제거래</b>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
<b>국세우선징수권</b>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b>근거과세</b>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b>근로소득공제</b>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데 이를 근로 소득공제라 함
<b>근로소득금액</b>	근로소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한 금액
<b>근로소득 세액공제</b>	월정급여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함
<b>근로장려세제 (EITC)</b>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
<b>금융소득 종합과세</b>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금액 (2천만 원)을 기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b>금지금</b>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
<b>기간과세</b>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파악된 유량(flow)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b>기본관세</b>	법률에 의해 장기간 적용되는 관세
<b>기본공제</b>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
<b>기부금</b>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
<b>기업회계기준</b>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
<b>기장의무</b>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과 계산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거래행위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세법에서 규정.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장부는 비치해야 함

<b>기장세액공제</b>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함
<b>기준경비율</b>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b>기준시가</b>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기타 토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
<b>기초공제</b>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대상의 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
<b>기타소득</b>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b>긴급관세</b>	특정상품이 자국에 급속도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긴급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
<b>기한후신고</b>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함

## L

<b>납기전징수</b>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b>납부기한</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
<b>납부세액</b>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b>납세의무자</b>	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b>납세의무의 승계</b>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함.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 시키고자 하는 것

<b>납세자</b>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b>납세자보호관</b>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b>납세자권리현장</b>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b>납세지</b>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 하는 장소적 기준
<b>납세보증인</b>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b>내국법인</b>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
<b>내국세</b>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것을 총칭
<b>내국신용장</b>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 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b>농어촌특별세</b>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b>누진세율</b>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말함.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초과누진율이 있음
<b>누적효과</b>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

<b>다국적기업</b>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 다국적 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조세회피처나 저세율국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b>다단계거래세</b>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임
<b>단기재상속세액공제</b>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소유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b>단순경비율</b>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
<b>담배소비세</b>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
<b>담세력</b>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
<b>담세자</b>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
<b>대리납부</b>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
<b>대손충당금</b>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대비 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충당금
<b>동업기업 과세특례</b>	동업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b>동족회사</b>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로서 보통세

**ㄹ**

**레저세**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차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

**리스계약**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ㄱ**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매출세액**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면세**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면세사업**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

**면세재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

**명목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

**목적세**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무제한납세의무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b>물적납세의무</b>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
<b>미납부가산세</b>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b>미등기양도자산</b>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의 당해 자산으로, 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70%)이 적용됨
<b>미등록가산세</b>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 성격은 가지는 과태료
<b>미성년자공제</b>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구역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b>미실현이익</b>	아직 판매되지 않아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 물가상승시 보유자산의 평가이익 등이 해당함

## 비

<b>발생주의</b>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
<b>배당세액공제</b>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b>배당소득</b>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용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b>배우자공제</b>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
<b>법인세</b>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b>법정기부금</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b>법정납부기한</b>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세법에서 규정
<b>법정상속분</b>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
<b>보복관세</b>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 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b>보세구역</b>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장소로서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에 한하여 저장할 수 있음. 외국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고 여기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옮겨져 내국물품이 된 때에야 과세함
<b>보세제도</b>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b>보통징수</b>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b>보험료 공제</b>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정보험료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연금보험료공제는 기타소득공제로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대별됨
<b>본선인도</b>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인도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상운임이나 선적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측이 부담함 (FOB: free on board)
<b>본세</b>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본래의 세금
<b>부가가치세</b>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
<b>부가가치율</b>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b>부가세</b>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b>부과과세제도</b>	조세의 확정 권한을 과세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고 있음
<b>부담금</b>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b>부담보증여</b>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b>부당행위계산부인</b>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 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
<b>분납</b>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b>분류소득세제</b>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b>분리과세</b>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
<b>비과세소득</b>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과세제외소득
<b>비사업용토지</b>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b>비영리법인</b>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人

<b>사내유보</b>	기업의 이익처분 중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함.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적립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음
-------------	---

<b>사업소득</b>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함
<b>산림소득</b>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음
<b>산출세액</b>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b>상속세</b>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 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b>세금계산서</b>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산서를 말하며 일종의 세금영수증임
<b>세무조정</b>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b>세액감면</b>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
<b>세액공제</b>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b>세율</b>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
<b>소급과세의 금지원칙</b>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원칙
<b>소득공제</b>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b>소득처분</b>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
<b>손금불산입</b>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조세 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임
<b>손금산입</b>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치로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즉, 자본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니며, 영업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닌 것을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
<b>시가표준액</b>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b>신고납세제도</b>	납세의무자 납세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 즉 납세의무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를 말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b>신고불성실가산세</b>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b>신고조정</b>	결산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b>실질과세의 원칙</b>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
<b>실효세율</b>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의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률을 말하며,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b>심사청구</b>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국세기본법상)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
<b>심판청구</b>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됨



<b>양도가액</b>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격
<b>양도담보</b>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b>양도소득</b>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회로 과세함
<b>양도소득 기본공제</b>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
<b>양도소득금액</b>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b>양도소득세</b>	토지, 건물, 대주주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b>양도차익</b>	소득세법 및 특별부가세(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

<b>양허관세</b>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b>업무무관경비</b>	기업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음
<b>연결납세</b>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이들 관계회사 그룹에 대하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합쳐서 계산하여 실질적 조세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b>역진세율</b>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
<b>연대납세의무</b>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제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b>연부연납</b>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인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
<b>영세율</b>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종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종량세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0)인 것
<b>예납세액</b>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b>예정신고</b>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함
<b>외국법인</b>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에 대응되는 개념
<b>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b>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가격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b>원천징수</b>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b>원천징수의무자</b>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
<b>유산과세방식</b>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b>유산취득과세방식</b>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
<b>응능부담의 원칙</b>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조세부담원칙
<b>응익부담의 원칙</b>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세부담원칙
<b>의제매입세액</b>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b>이월결손금</b>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b>이월공제</b>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한 것
<b>이의신청</b>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청에 대해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
<b>이전가격세제</b>	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
<b>이중과세</b>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임. 예를 들면,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등이 있음
<b>익금불산입</b>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

<b>익금산입</b>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또는 요소)이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b>인적공제</b>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b>인지세</b>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
<b>일괄공제</b>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 공제라 함
<b>일감 몰아주기</b>	모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것
<b>일반소비세</b>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

## ㄱ

<b>자가공급</b>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를 말함
<b>자녀세액공제</b>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
<b>자경농지</b>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함.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
<b>자동차세</b>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b>자산소득</b>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소득종류 중 소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함
<b>자유무역지역</b>	자유무역지역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상호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나 수출입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역외 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국이 각각 독자의 관세, 기타 통상규칙을 적용하는 제도

<b>자회사</b>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므로,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함
<b>잠정관세</b>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관세로, 잠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됨
<b>장기보유특별공제</b>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
<b>재산세</b>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
<b>재정환율</b>	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
<b>절세</b>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
<b>점감구간</b>	근로장려세제에서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
<b>점증구간</b>	근로장려세제에서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
<b>접대비</b>	기업활동비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과 같은 항목의 지출금을 뜻함
<b>정상가격</b>	생산원가에 적당한 평균이윤을 부가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가격
<b>제2차 납세의무자</b>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b>제척기간</b>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
<b>제한세율</b>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한 것을 말함
<b>조정관세</b>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b>조세</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가 그의 경비 총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
<b>조세부담률</b>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b>조세심판원</b>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
<b>조세조약</b>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
<b>조세특례제한법</b>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b>조세평등의 원칙</b>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 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
<b>조세회피처 (tax haven)</b>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b>조세회피행위</b>	어떤 경제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
<b>증가세</b>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b>증량제</b>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b>종합부동산세</b>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조세
<b>주민세</b>	지방세의 하나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b>주세</b>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b>중간에납</b>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에납기간을 정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b>증권거래세</b>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b>증여세</b>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b>증여재산공제</b>	친족 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b>지방세</b>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
<b>지방교육세</b>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b>지방교육재정교부금</b>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b>지방소득세</b>	그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b>지방소비세</b>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자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 적용
<b>지역자원시설세</b>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b>지점세</b>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surtax)
<b>지정기부금</b>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b>징수권</b>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함

<b>징수유예</b>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b>징수의무자</b>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

## 大

<b>참가압류</b>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에 같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
<b>청산소득</b>	법인이 사업수행을 종결짓고, 그 시점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출자자에게 반제할 것을 반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청산소득이라고 함
<b>체납처분</b>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
<b>초과누진세율</b>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
<b>초과반환금</b>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
<b>총수입금액</b>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
<b>총당금</b>	아직 지출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연도의 부담이 될 금액에 대한 준비로서 추정된 금액을 불특정형태의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
<b>최저한세</b>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b>취득가액</b>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의 대가 또는 취득의 대가로 의제하는 것
<b>취득세</b>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

## E

<b>탄력관세</b>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보호나 물가의 안정 내지는 경제적 인 이유로 국정관세율을 증감·변경할 수 있는 관세
<b>탄력세율</b>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
<b>탈세</b>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
<b>퇴직급여충당금</b>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
<b>퇴직소득</b>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의 총칭
<b>퇴직소득공제</b>	퇴직급여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한 금액에서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b>특별징수</b>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
<b>특별회계</b>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
<b>특수관계인</b>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
<b>특혜관세</b>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 II

<b>파생금융상품</b>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 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b>표준세액공제</b>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성실사업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7만원)에게 항목별 세액 공제 대신 연간 12만원을 세액공제
<b>표준세율</b>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b>표준소득율</b>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추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놓은 기준.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됨
<b>피상속인</b>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함
<b>피합병법인</b>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법인
<b>필요경비</b>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

## ㅎ

<b>합산과세</b>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
<b>할당관세</b>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
<b>협정세율</b>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
<b>확정신고</b>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세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납세신고임
<b>환가처분</b>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
<b>환급</b>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주는 행위로 환부라고도 말함.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함

<b>환수효과</b>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 거래단계에 모두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라 함
<b>환지처분</b>	토지개발·개발이나 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 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처분
<b>1세대 1주택</b>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일정기간(1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말함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재정경제통계 시스템([www.nabostats.go.kr](http://www.nabostats.go.kr))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통계 및 경제 통계 등을 One-Stop 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으로, 재정·경제 통계 외에도 입법현장에서 필요한 위원회 및 소관부처별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계, 북한통계, OECD·IMF 등의 국제통계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와 관련한 수정내역, 부대의견, 시정요구 등 국회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회 심사연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에서는 2022 조세수첩에 수록된 통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의 심의 (2022. 4.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연락처: 추계세제총괄과 (Tel) 02-6788-3776 (E-mail) etcd@nabo.go.kr

---

## 2022 조세수첩

---

**발 간 일** 2022년 4월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국회  
TEL. 02·6788·3776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ISBN: 979-11-6799-042-6 92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638-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